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2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2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CEO Message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와 재정 위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으며, 국내 경제도 수출 감소, 가계부채 확대 등에 따라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으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2011년 1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지난해에도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고, 손해보험 1개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금융제도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SPC 자산 및 PF채권 등 부실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들 자산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매각을 통하여 투입자금의 회수 극대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금융업계에 건전경영 풍토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부실위험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와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내실화,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하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공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예금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예금보험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공사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금융 시장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세계 일류 예금보험기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차보고서가 예금자보호제도와 공사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주현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2 연차보고서

본 | 문 | 차 | 례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1
제2장	조직 운영	17
	제1절 조직 구성	18
	제2절 조직 관리	24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7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38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44
제4장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51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52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54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57
제5장	리스크 관리	65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66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76
제6장	부실금융기관 정리	81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82
	제2절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가교저축은행 등 관리	86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별자산의 관리	92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99
제1절 파산재단 관리	100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105
제8장 건전경영 풍토 조성 및 부실책임 추궁	109
제1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110
제2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12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16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18
제9장 기금 관리	123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24
제2절 예금보험기금	135
제10장 2012년도 결산	145
제1절 결산 개요	146
제2절 결산 기준	147
제3절 결산 현황	153
부 록	167
1. 예금보험제도 개요	168
2. 대외평가	171
3. 2012년도 주요일지	172
4. 통계	173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2 연차보고서

표|차|레

〈표 I - 1〉 2012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3
〈표 I - 2〉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5
〈표 I - 3〉 2012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6
〈표 I - 4〉 2012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8개사) 정리 현황	7
〈표 I - 5〉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11
〈표 I - 6〉 2012년 중 주요 공적자금 회수내역	13
〈표 I - 7〉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14
〈표 II - 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19
〈표 II - 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19
〈표 II - 3〉 2012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20
〈표 II - 4〉 임 원	22
〈표 II - 5〉 조직도	23
〈표 II - 6〉 인원 현황	23
〈표 II - 7〉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26
〈표 II - 8〉 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27
〈표 II - 9〉 2012년도 사회공헌 활동 내역	33
〈표 II - 10〉 2단계(2012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35
〈표 III - 1〉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이미지	39
〈표 III - 2〉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결과	40
〈표 III - 3〉 표시제도 현장점검 1인당 영업점 수	41
〈표 III - 4〉 2012년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43
〈표 III - 5〉 여신고객 불편 해소 방안	44
〈표 III - 6〉 2012년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48
〈표 III - 7〉 2012년도 미수령 배당금 지급 실적	49
〈표 IV - 1〉 2012년도 주요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54
〈표 IV - 2〉 2012년 주요 발간물	55
〈표 IV - 3〉 2012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실적	62
〈표 V - 1〉 2012년 리스크상시감시교실 개최내역	67
〈표 V - 2〉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전 · 후 비교	69
〈표 V - 3〉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 · 후 비교	71

〈표 V - 4〉 금융감독원과 의 공동검사 실적	71
〈표 V - 5〉 2012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74
〈표 V - 6〉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 추가 · 수정 내역	77
〈표 VI- 1〉 2011년 이후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83
〈표 VI- 2〉 2012년 영업정지 저축은행별 경영관리 인력 파견 현황	84
〈표 VI- 3〉 예금담보대출 알선 실적	85
〈표 VI- 4〉 2012년 상반기 부실저축은행 정리	87
〈표 VI- 5〉 2012년 하반기 부실저축은행 정리(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87
〈표 VI- 6〉 특별자산 현황	93
〈표 VI- 7〉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93
〈표 VI- 8〉 특별자산 4단계 회수관리 체계	94
〈표 VI- 9〉 특별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94
〈표 VI-10〉 매각 대상자산별 외부전문기관 유형	95
〈표 VI-11〉 회수유형별 실적	96
〈표 VII- 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101
〈표 VII- 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103
〈표 VII- 3〉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104
〈표 VII- 4〉 2012년 중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	105
〈표 VII- 5〉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누계)	106
〈표 VII- 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107
〈표 VIII- 1〉 부실금융기관 관련 위법 · 부당행위 조사 현황	114
〈표 VIII-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114
〈표 VIII- 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저축은행 관련 소송제기 현황	115
〈표 VIII- 4〉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 · 부당행위 조사 현황	116
〈표 VIII- 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	117
〈표 VIII- 6〉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119
〈표 VIII- 7〉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119
〈표 VIII- 8〉 연도별 신고센터 접수건수, 회수건수 및 회수금액 현황	121
〈표 IX- 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125
〈표 IX- 2〉 금융권별 특별기여금 수입	125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2 연차보고서

표|차|레

〈표IX-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126
〈표IX-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126
〈표IX-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127
〈표IX-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2년)	128
〈표IX-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28
〈표IX-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129
〈표IX-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130
〈표IX-10〉 상환기금의 회수(2012년)	131
〈표IX-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131
〈표IX-12〉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133
〈표IX-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134
〈표IX-14〉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136
〈표IX-15〉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수입	136
〈표IX-16〉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137
〈표IX-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채권 발행 및 상환	137
〈표IX-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138
〈표IX-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2년)	139
〈표IX-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39
〈표IX-21〉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140
〈표IX-22〉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2년 및 누계)	141
〈표IX-23〉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141
〈표X-1〉 요약 재무상태표(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57
〈표X-2〉 요약 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58
〈표X-3〉 요약 재무상태표(예금보험기금)	159
〈표X-4〉 요약 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160
〈표X-5〉 요약 재무상태표(공사회계)	161
〈표X-6〉 요약 손익계산서(공사회계)	162
〈표X-7〉 요약 재정상태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3
〈표X-8〉 요약 재정운영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4

〈그림 I -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11
〈그림 II - 1〉 KDIC 비전 및 경영목표 체계도	25
〈그림 II - 2〉 KDIC 성과관리체계도	29
〈그림 II - 3〉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전략 체계도	30
〈그림 II - 4〉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2011~2013)	34
〈그림 III - 1〉 홍보만화	39
〈그림 III - 2〉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	41
〈그림 VI - 1〉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비교	91
〈그림 VII - 1〉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104
〈그림 VIII - 1〉 위법 · 부당행위자 책임추궁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113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미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비전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핵심가치



전략목표

예금자보호
서비스의 최적화

기금관리체계의
선진화

지원자금 회수의
극대화

지속가능경영의
고도화

전략과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금융회사 정리

원활한 기금조성 및
합리적 운용

지원자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회수

성과주의 강화를 통한
핵심역량 제고

편리한 예금대지급
서비스 제공

실효성 있는
부실위험 관리

부실책임조사 강화를
통한 건전경영풍토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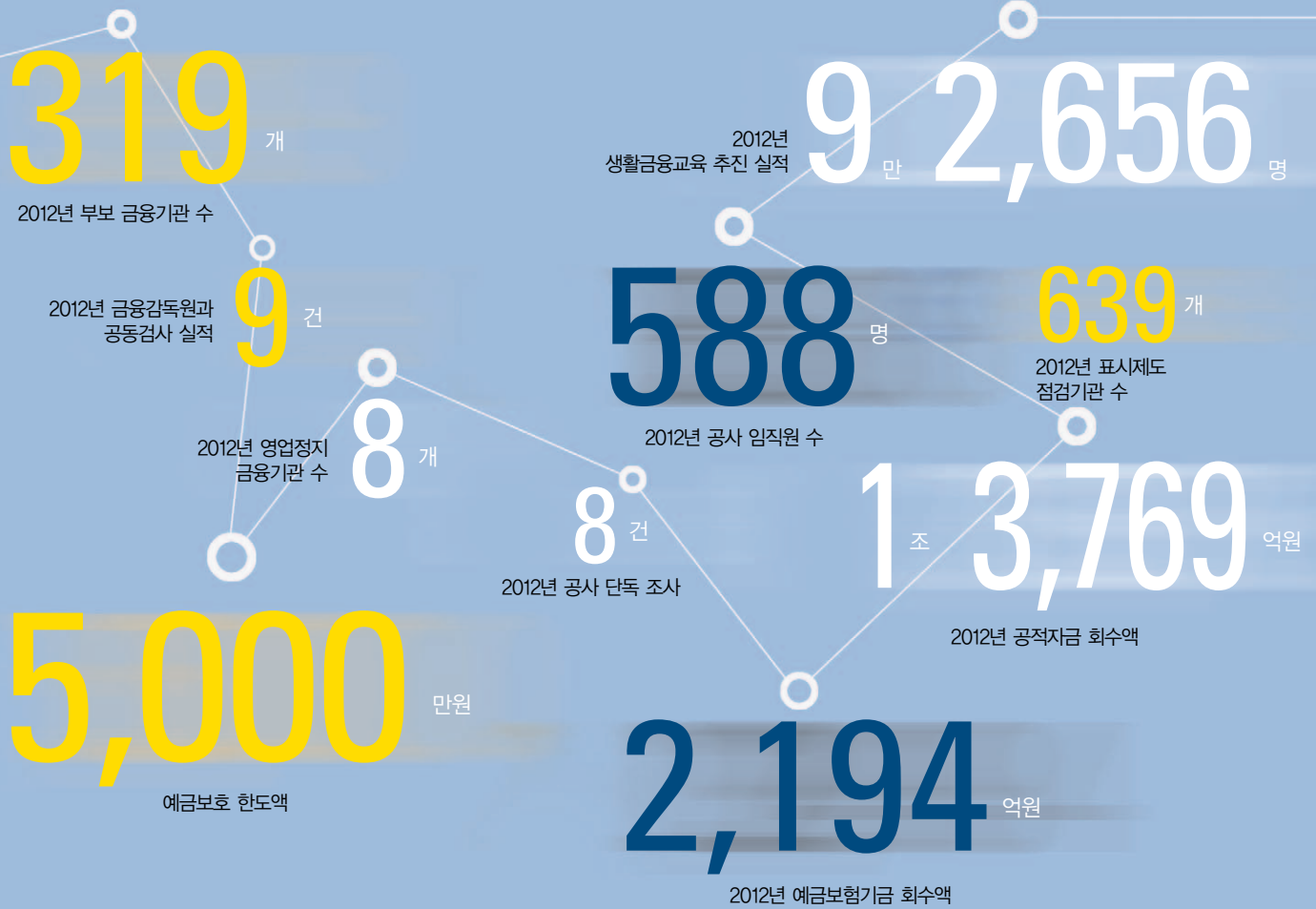
윤리경영 강화 및
사회공헌 활성화

능동적인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글로벌 선진제도
창출 및 상호 공유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KDIC

2011년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2012년에도 8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고, 손해보험 1개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사는 이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 최소화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영업정지 후 즉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여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정리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보유한 SPC 자산 및 PF 채권 등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금융업계에 건전경영 풍토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자 공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재정비하였다.

능동적인 예금자보호 서비스 실현

공사는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 원금의 40%(5천만원한도)까지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보류로 인해 예금자에게 이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 지급 시 전산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계좌 개설은행을 확대하고 예비계좌를 운영하였으며 300개 이상의 지급대행점을 확보하였다.

경영관리 중 여신 고객 등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사 관련 저축은행 여신험의회 구성, 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 제공,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안내 및 대출 채무자 상환 안내 등을 추진하였으며, 임직원 횡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한주저축은행 예금자(374명, 165억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자금흐름조사를 마무리하여 피해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예금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시제도 안내 강화를 목적으로 “예금표시제도 전담 데스크”를 설치·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한편 금융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저축은행, 예금자가 많은 은행 영업점 및 보험회사 고객센터등을 중심으로 2012년 중 전년대비 167개(35%) 증가한 639개 영업점에 대해 표시제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한편, 「시장경영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과 협의하여 상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생활금융교육 강의 실시를 추진하고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초등학교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국경제교육협회 주관 경제교육진흥박람회 등에 참가하였다.

공사는 예금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지급금 제도 개선,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을 예금표시 제도 안내 강화 등을 통해 능동적인 예금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

〈표 1-1〉 2012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명)

구 분	교 육			캠페인		합 계
	초등학생	상인대학	기 타	전통시장	기 타	
실 시	213	98	5	143	7	466
대상인원	15,904	5,889	157	24,974	45,732	92,656

공사는 고령자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과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 주요 도시 중심의 지역 민영방송(TV) 및 신문, 라디오와 극장,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예금 보호한도 등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 직원 및 일반인에 대해서도 예금보험제도 안내 방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Global-KDIC KSP)」을 통해 예금보험제도 운영 노하우 전파 등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발도상국 등 해외 국가들로부터 공사의 위기 극복과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 등을 배우려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공사는 그간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나누고자 2010년 12월부터 역량 강화 연수와 정책자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 공유 사업(Global-KDIC KSP)”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정부 KSP 사업에 참여하여 탄자니아, 몽골 등 2개국을 대상으로 워크숍, 정책실무자 연수 등을 통해 금융 분야 정책운영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기존 7개국* 외에 중국, 대만, 나이지리아, 케냐 등 4개국을 신규 추가하는 등 자체 KSP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 2011년도 이전 추진 대상 국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몽골, 말레이시아, 네팔, 부탄

한편 공사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사업방식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의 수요가 높은 6개 분야에 대한 KDIC Specialists를 구성하고 이들을 주축으로 분야별 콘텐츠 모듈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 KSP 사업의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공사는 예금보험 현안에 대한 정보·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2012년 신규 추가된 탄자니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2012년 말 현재 총 12개국 15개

기관과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사는 예금보험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1차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연차총회에서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IADI 집행위원국으로서 주요 의제 논의, 연구·조사 활동 주도 등 적극적인 IADI 활동 등을 통해 공사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공사는 독자적인 리스크 상시감시 모형을 운영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재무현황 변동 및 잠재 리스크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점검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 혁신방안」(2011.9.2)에 따른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2012.3.26)으로 공사의 저축은행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2012년 중 공사는 BIS비율 7%미만, 3년 연속 적자 등 단독 조사 요건에 해당되는 8개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에 통보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공동검사가 의무화된 6개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저축은행에도 통보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공사는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8개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 최초 실시

〈표 1-2〉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공동검사	→	2009년 15개사	→	2010년 24개사	→	2011년 31개사	→	2012년 9개사
단독조사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8개사

공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5개 금융정책 유관 기관간 업무협약체인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하여 금융정책기관 상호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3건의 정보를 추가 제공 받음으로써 22건의 정기보고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272건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제공받고 있다.

그 외에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 징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저축은행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적극 유도하였다.

부실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 및 제도 개선

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제3자 또는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으로 차질 없이 정리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의 예금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사는 2012년도 중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등 8개 저축은행을 제3자 또는 가교저축은행 계약 이전 방식으로 차질 없이 정리하였다.

〈표 1-3〉 2012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2012. 5. 6	2012.10.19	2012.11.16	2012.12.28
저축은행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상반기 영업 정지된 솔로몬, 한국, 미래 저축은행은 2011년 이후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으로 매수 수요가 부족한 Buyer's Market임에도 입찰참가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매수자 폭을 확대하는 한편, 매수자의 선호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 제3자 계약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한편, 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등 하반기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그간의 정리방식과 달리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영업정지 없이 영업을 지속 하면서 정리절차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리방식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저축은행을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하고 주말 동안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절차를 마무리하여 월요일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금자 및 여신거래자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금융시장의 혼란 없는 정리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1-4〉 2012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8개사) 정리 현황

영업정지 저축은행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인수기관	↓ 우리 금융	↓ 하나	↓ 친애 ¹⁾	↓ 에나래 (가교)	↓ 예술 (가교)	↓ 예한별 (가교)	↓ 예한솔 (가교)	↓ 예성 (가교)

주 : 1) 일본 KC카드 설립 저축은행

아울러, 가교저축은행 및 계열저축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가치를 제고하고자 공사 전담조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부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흑자를 달성하거나 손실규모가 축소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계열저축은행도 경영진단 추진 및 전문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계속된 불황과 매물과다로 인한 인수 수요 부족 등으로 가교저축은행 등 공사 관리저축은행의 시장매각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매각가치 제고와 매각노력을 병행 추진한 결과 2012년 하반기에는 신한금융지주를 예한별저축은행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축은행 정리와 더불어 2012년 7월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그린손해 보험에 대해서도 2012년 8월 23일 매각공고 후 9월 12일 3곳의 예비인수자를 선정하고, 2012년 11월 12일 입찰을 통해 자베즈제이호 투자목적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특별자산 회수극대화를
위해 자산별 특성을 감안
하여 매각방안을 마련
하는 등 다각적 회수 노력
추진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한 PF 채권 및 SPC 자산 등 주요 특별자산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하여 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산별로 특화된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적정 매각시기 및 매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기초로 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정리방식을 결정하고,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하여 관련 관공서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인허가·사업권 등의 획득 및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유사 성격의 자산은 그룹화하여 관리하고 개별 자산건별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외제차, 고가 미술품 등에 대하여는 미디어데이 개최, 경매대상 미술품의 사전 전시회 개최 및 해외 경매 출품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회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특별자산 매각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매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매각 방안 등을 심의하는 한편,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방식을 단일 기관에서 복수기관에 의한 평가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자문시스템을 마련하여 골프장 매각자문단 및 전문경영인 Pool을 구성하고 전문검사역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매각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공사는 파산재단 종결지원반을 설치하여 파산재단 종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파산채권의 조기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472개 파산재단 중 421개를 종결하였다.

한편 공사는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사가 대리수령한 배당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종결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하고 능동적인 예금자보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재단별로 연간 배당목표액을 부여하고, 배당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조기배당을 유도하는 등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중 3,168억 원의 파산배당을 달성하여 목표액(2,312억)을 37%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파산재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파산재단 사무실을 통·폐합하고, 적정 보조인수 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파산재단 운영경비 절감 및 운영의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에 대한 교육, 파산재단 업무현황 조사,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썼다.

또한 공사는 파산재단 자산관리 시스템(FASTs)을 통한 자산의 유형별 보유현황 및 매각대상 자산을 파악하여 맞춤형 매각방안을 수립하는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 매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공사는 파산재단의 운영 비용 절감, 자산 매각 활성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파산배당 극대화 및 적극적 파산재단 종결 추진

엄정하고 효율적인 부실책임 추궁

공사는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될 경우 영업정지 직후 검찰수사 진행상황, 조사대상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실책임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사반을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부실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건전 경영 풍토 조성 교육을 실시

편성하여 부실 저축은행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부실 책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영업 정지된 15개 저축은행은 2012년 4월에, 2012년 상반기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은 2012년 10월에 부실책임조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하반기 영업 정지된 토마토2, 진흥저축은행은 부실책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실책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 초기지원반 및 지도 점검반 운영, 전담변호사 제도 운영 등 현장중심의 업무지원을 통해 부실관련 자에 대한 파산재단의 적극적인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기관 및 부실규모 증가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였고,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 대상자가 적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실무회의에서 소명할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심의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한편,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채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 실익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이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 및 차주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완료 하였고, 자진변제 유도 등을 통해 높은 회수성과를 시현한 바 있다.

또한, 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등 부실책임자의 은닉 재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부터 신속하게 재산 조사를 착수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 추적 강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검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감사를 대상으로 “상호저축은행 감사 워크숍” 개최, 저축 은행 임직원 대상 건전경영 풍토조성 교육 등을 통해 저축은행업권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에 노력하였고, 위법·부당행위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례 등을 분석·정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현장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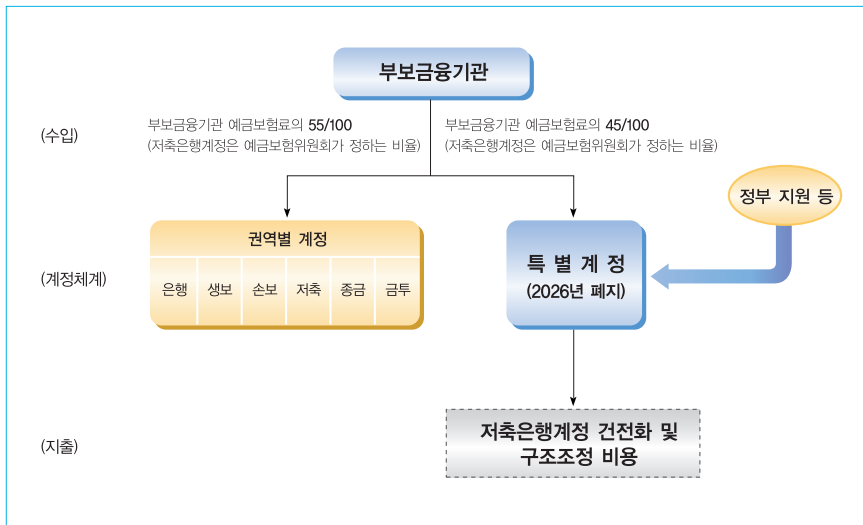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제고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2011년 이후 총 24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2012년 중 12조 3,031억원을 포함하여 2012년 12월 말까지 예금보험금 지급 등으로 총 24조 8,951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여 적기에 지원하였다.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예금보험료·차입금·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1년 1월부터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공사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구조조정 자금을 차질 없이 조달 지원

〈그림 1-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표 1-5〉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조원)

지 원 액			조 달 액	
삼화 등 24개 저축은행	출자, 출연 및 예금보험금 등	24.9	계정 간 차입	1.8
			특별계정채권 등 외부조달	22.5
			예금보험료 등	0.6
합 계		24.9	합 계	24.9

또한, 공사는 2012년 7월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억원을 무이자·장기 상환 조건(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용자받아 조달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예금보험 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 발행을 통한 은행 등 외부차입금 대환, 자체 채권전자 입찰시스템(E-BAS) 구축, 은행 등과의 한도대출약정 (한도 15조원) 만기연장시 금리 하향 조정 추진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였다.

한편 공사는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 포함)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2년 중 파산배당금 등으로 총 2,194억원을 회수 하였다.

2014년부터 도입·예정인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차등평가모형 기본체계, 금융업권별 평가지표 등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안」을 확정(2012.3) 하는 한편, 차등보험료율 산출 및 데이터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RBPS, risk based premium system)의 구축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공사는 목표기금제 운영에 따른 보험료 감면 실시와 관련하여 2011년 말 제정별 기금적립률에 따라 목표규모 상한을 초과한 금융투자계정, 생명보험 계정은 보험료를 면제하였고, 하한을 초과한 손해보험계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일부를 감면(15%) 하였다.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

공사는 보유지분 매각 등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이행을 통해 '12년말 까지 59.5조원을 상환

공사는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공사는 공적자금 상환 대책에 따라 상환해야 할 82.4조원 중 총 59.5조원을 정부출연금(45.7조원)과 회수자금 등(13.8조원)으로 2012년 말까지 상환 하였다. 잔여 부채 22.9조원도 회수자금과 특별기여금 등으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지분 매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2012년 중에만 출자 금융기관 지분 매각, 배당금 수령 및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총 1조 3,769억원을 회수하였다.

한국전력 지분(KR&C 보유) 3.66%를 2012년 10월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하여 6,087억원을 회수하였으며, SK하이닉스 지분의 (KR&C 보유) 0.74%는 2012년 2월 채권단 공동매각을 통하여 1,022억원을 회수하였다. 제주은행 지분(공사 보유) 및 SG세계물산지분(KR&C 보유)은 장내거래를 통해 각각 보유 지분 0.06%, 0.07%를 매각하여 1억원을 회수하였으며, 공사 및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공매를 통해 총 6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6〉 2012년 중 주요 공적자금 회수내역

한국전력	• 2012. 10월, 보통주 블록세일을 통해 6,087억원 회수
SK하이닉스	• 2012. 2월, 보통주 채권단 공동매각을 통해 1,022억원 회수
제주은행	• 2012. 1월~12월, 보통주 장중매각을 통해 1억원 회수
SG세계물산	• 2012. 1월, 보통주 장중매각을 통해 0.4억원 회수
기 타	• 2012. 9월, 공사 및 케이알앤씨 보유 비상장주식 공매(5개 종목)를 통해 1억원 회수 • 2012. 12월, 공사 및 케이알앤씨 보유 비상장주식 공매(4개 종목)를 통해 5억원 회수
파산재단	• 2012. 1월~12월, 파산배당금으로 2,939억원 회수

한편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관련하여서는 2012년 4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에 따라 민영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2012년 8월 매각 절차가 부득이하게 중단되었다.

향후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재추진 시기와 방법 등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기타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개별 주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상황 및 주가추이를 보아가며 블록세일, 장중매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1-7〉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총지원액	기회수액 ¹⁾	잔여지분 평가액 ²⁾	공사 지분율
MOU 체결	우리금융	127,663	56,237	54,185	56.97
	수 협	11,581	-	9,735	우선출자증권
	서울보증	102,500	22,421	1,361	93.85
한 화 생 명		35,500	13,609	16,681	24.75
제 주 은 행		2,182	294	181	18.42
합 계		279,426	92,561	82,143	-

주 : 1) 지분 매각, 배당금,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

2) 상장주식은 2012년 12월 말 종가기준, 비상장주식은 2012년 말 공사 결산서 기준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조직 구성

1. 예금보험위원회 및 이사회

가.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사 사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공사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의 수립,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기금 계정간의 거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지정,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예금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결정, 정리금융기관과 부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공동검사 참여 요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표Ⅱ-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012년 12월말 현재)

구 성		성 명
당연직 위원	예 금 보 험 공 사 사 장	김 주 현
	금 융 위 원 회 부 위 원 장	추 경 호
	기 획 재 정 부 차 관	신 제 윤
	한 국 은 행 부 총 재	박 원 식
위촉직 위원	금 융 위 원 회 위 촉	이 흥 권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추 천	이 철 환
	한 국 은 행 총 재 추 천	안 세 일

〈표Ⅱ-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내 용
의결 사항	의 결	- 공사 정관의 변경 -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 출연금, 예금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내지 납부 유예 - 예금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 예금보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송부 요청 또는 공동검사 참여 요청 -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 조치 요청
	결 정	- 부실금융기관의 판정 - 부실우려금융기관의 판정 - 기금 계정간의 거래 -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의 공개 방법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관련 필요 사항 -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관련 필요 사항 - 가지급금의 지급 -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자금지원 등의 예외 인정
	심 의	- 기금운용계획 - 공사 업무와 관련한 제규정의 제·개정
	지 정	- 여유자금의 운용 - 매입 대상 유가증권의 지정 - 예치 대상 부보금융기관의 지정
보 고 사 항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분기별 점검실적 보고

〈표II-3〉 2012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일 자	처 리 안 건
1.10	- 제일저축은행 일부 자산 · 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 지원안 - 제일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1.26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안 - 운영경비배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 및 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 확정보고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계정간거래 내역보고
2. 2	- 제일이 · 에이스저축은행 일부 자산 부채 ·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제일이 · 에이스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2.16	2011년도 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공사회계의 결산안 2011년도 운영경비 정산결과 보고
2.22	-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주) 공동검사 결과
3.29	○○손해보험(주) 공동검사 결과 - 우리금융지주(주), 우리 · 광주 · 경남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 계획 추가안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안
4.19	- 부보금융기관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정부자금 차입안 2011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5. 7	-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안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외부자금 조달방안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17	- 목표초과계정(금투 · 생보 · 손보)에 대한 예금보험료 감면 결정안 - 부보금융기관등의 공동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12	2013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계획안 및 동 채권에 대한 국가의 채무보증 신청안 -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정상화계획 추가안 2012년도 예금보험공사 추가경정예산안
6.27	-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안 ○○생명보험 등 7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안 ○○손해보험(주) 공동검사 결과

일 자	처 리 안 건
7.18	2012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8.20	- 솔로몬 등 3개 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8.24	○○,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9. 3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안
9.20	-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안 2012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반기결산 결과
9.25	진흥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안
10. 4	미래저축은행 일부 자산, 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10.17	- 토마토2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토마토2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및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2012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11. 1	○○및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생명보험 공동검사 결과
11.14	- 진흥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진흥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6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안 ○○ 및 △△저축은행 공동검사 결과 보고 ○○투자증권 공동검사 결과 보고
12.20	2013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12.26	- 경기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더블유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경기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 더블유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나. 이사회

이사회는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7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 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임원의 보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조직·인사 등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다른 법령·정관 또는 다른 내규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표II-4〉 임 원

(2012년 12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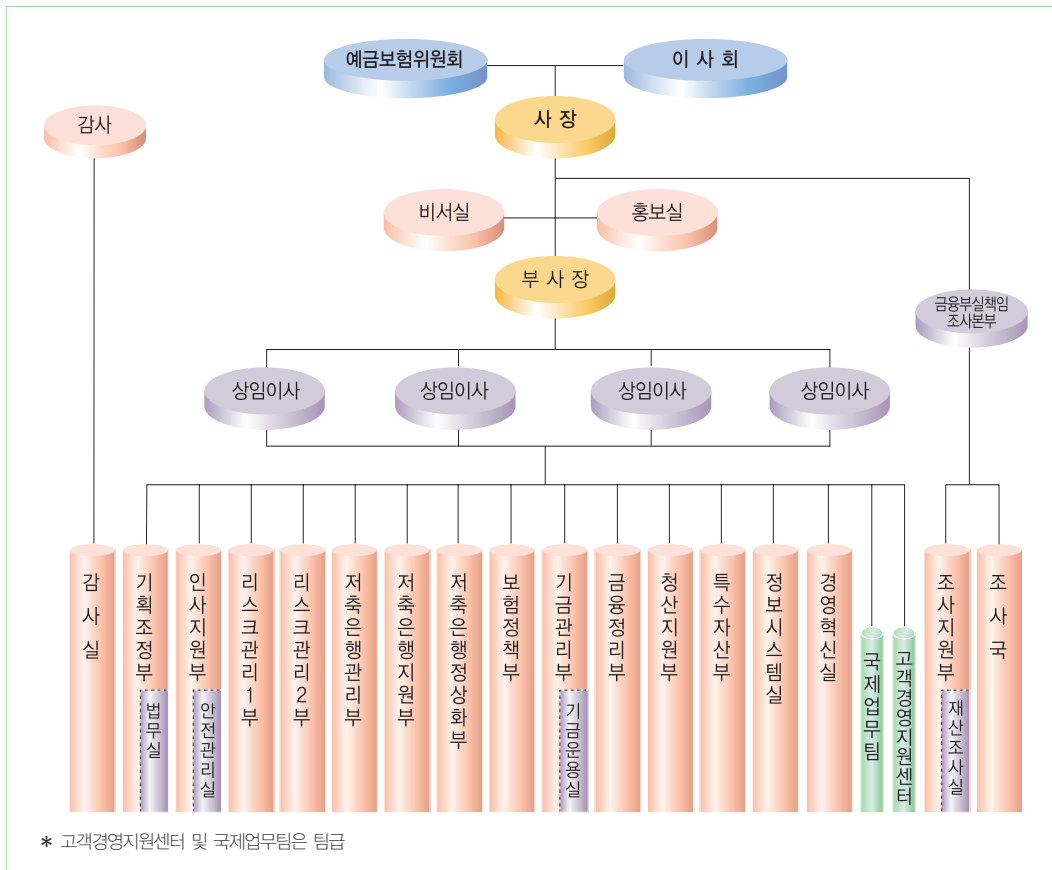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사 장	김 주 현
부 사 장	이 원 태
상 임 이 사	진 상 근
상 임 이 사	최 효 순
상 임 이 사	조 현 철
상 임 이 사	정 왕 호
비상임 이사	김 석 진
비상임 이사	정 찬 우
비상임 이사	한 정 길
비상임 이사	이 수 화
비상임 이사	이 기 석
비상임 이사	오 창 석
비상임 이사	김 교 식
감 사	이 상 목

2. 조직 일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기획조정부, 인사지원부, 리스크관리 1부, 리스크관리2부, 저축은행관리부, 저축은행지원부, 저축은행정상화부, 보험정책부, 기금관리부, 금융정리부, 청산지원부, 특별자산부, 정보시스템실, 경영혁신실, 홍보실, 비서실, 감사실 및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12부 5실 1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II-5〉 조직도

(2012년 12월말 현재)



〈표II-6〉 인원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인원, 단위 : 명)

구 분	임 원	직 원		
		일반직	별정직 ²⁾	합 계
인 원	14 ¹⁾	465	123	588

주 :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비상임이사 7인 포함

2) 변호사, 박사 등 전문직과 경영관리인, 파산관재인 및 검사인력 등 특정직



조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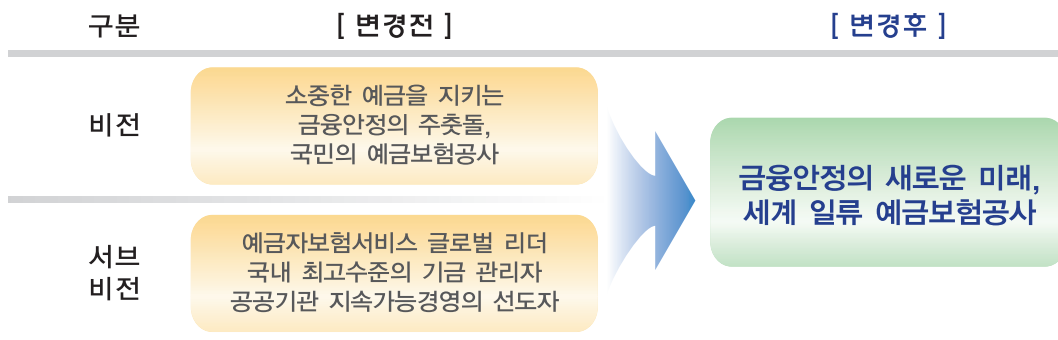
1. 비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가. 비전의 재정비 추진 배경

공사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및 신입 기관장의 새로운 경영철학 등을 반영하고, 비전정비에 대한 대내외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임직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2012년 10월 비전을 재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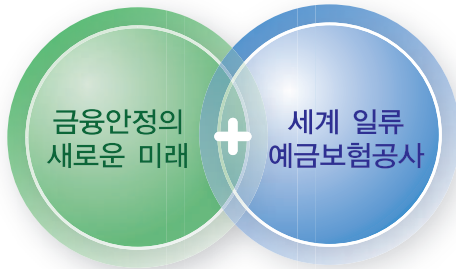
새로운 비전은 공사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도출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비전 및 서브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던 체계를 비전으로 통합하여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 비전 재정비 〉



나. 비전 정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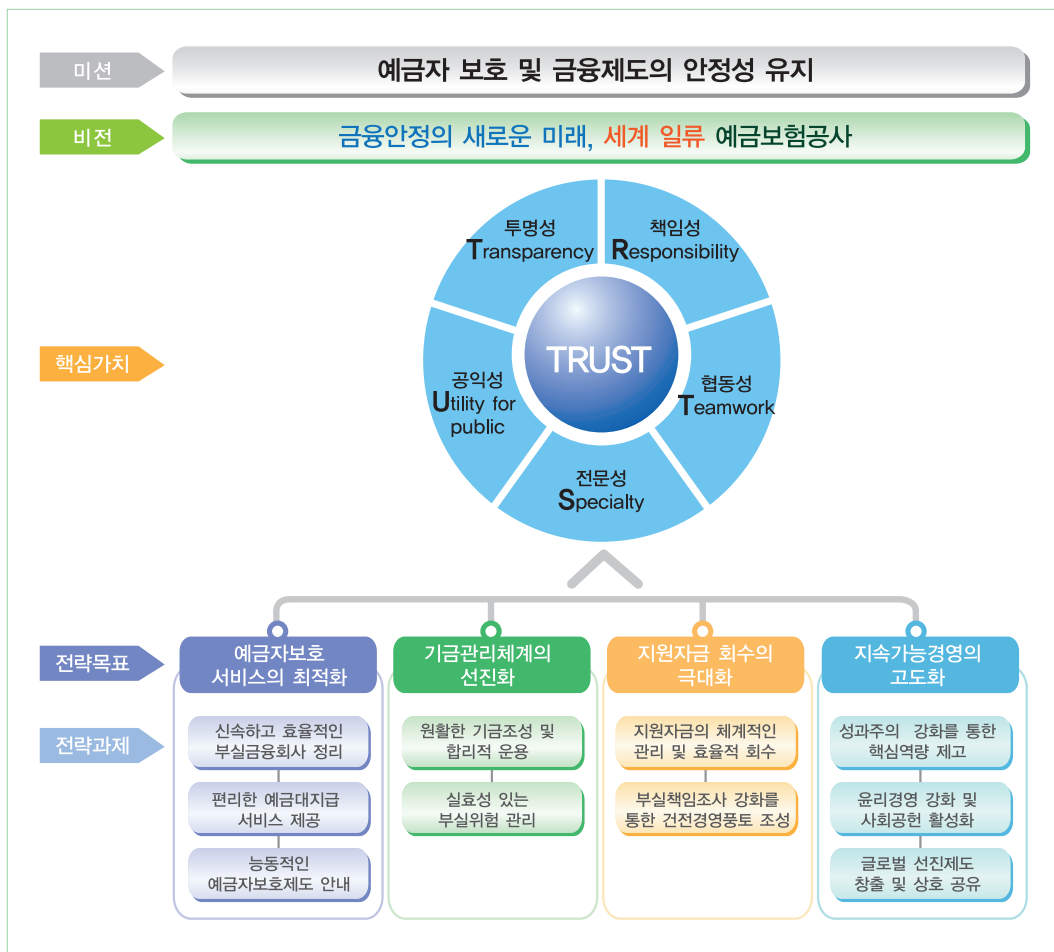
(1) 비전의 정의



최근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6년간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예금자의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수준의 예금자 보호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 비전 및 경영목표 체계도

〈그림 II-1〉 KDIC 비전 및 경영목표 체계도



다.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공사는 비전을 달성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전략목표로 '예금자보호서비스의 최적화', '기금관리체계의 선진화', '지원자금 회수의 극대화' 및 '지속가능경영의 고도화'로 설정하고, 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10대 전략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도 5년간(2013~2017)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표11-7〉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 추진계획
예금자보호 서비스의 최적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저축은행 정리 및 제도개선
	편리한 예금대지급 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금보험금 지급 -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법무지원
	능동적인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표시제도 점검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강화
기금관리체계의 선진화	원활한 기금조성 및 합리적 운용	- 예금보험기금의 효율적 관리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및 운영 - 상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상환대책 이행 -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 균형 관리
	실효성 있는 부실위험 관리	- 리스크 감시 역량 및 분석 서비스 강화 - 리스크요인의 조기파악 및 적시대응 - 조사·공동검사의 효율적 수행
지원자금 회수의 극대화	지원자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회수	- 보유지분 및 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 MOU 관리 효율성 제고 -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 특별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극대화
	부실책임조사 강화를 통한 건전경영풍토 조성	- 부실관련자의 국내 및 해외 재산조사 지속 실시 -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부실책임 추궁노력 강화 - 위법·부당행위자 사후관리 강화
지속가능경영의 고도화	성과주의 강화를 통한 핵심역량 제고	- 핵심업무 중심의 조직 운영 및 예산 절감 - 성과관리제도의 적정성 제고 - 인력관리 효율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보수제도 운영 - IT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원활한 협업체제 구축
	윤리경영 강화 및 사회공헌 활성화	- CS 경영체제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정착 - 금융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금융교육 강화
	글로벌 선진제도 창출 및 상호 공유	- 해외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전파 - IADI 주요사업 참여 및 해외 예보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역동적인 인사, 조직문화 구현

가.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하이-KDIC」 프로그램 실시

공사는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친절한 대국민 서비스(Hi)’와 ‘공사의 위상 및 역량 강화(High)’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이-KDIC」 프로그램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통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 및 ‘다함께 실천’을 「하이-KDIC」 프로그램의 3대 실행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공사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II-8〉 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2012년 실적
소통 활성화 (전방위 소통)	무비 데이	• 업무성과가 우수한 팀을 “이달의 팀”으로 선정하여 해당 팀원에게 영화관람 기회 제공	12회
	스마트 보드	• 직급별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스마트보드를 구성하여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	수시회의 개최
	Cross Meeting (합동간담회)	•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부서(팀)간 회의 개최	19팀
	해피 나잇	• 경영진이 직원 사기진작 제고 및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야간근무 실시 부서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행사	16회
	멘토링	•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배직원이 신입직원을 전담하여 일정기간 지도	100명
	탕데이 및 호프데이	• 격월(탕데이), 분기별(호프데이) 임원진과 직원간 혹은 부서장과 평직원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제공	54회
공감대 형성 (행복한 일터)	사회공헌 활동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부서 1도움주기, 무료급식 등 다양한 활동 실시	총 12개 프로그램 (3,000명)
	사내공모제	• 사내의 필요 인재를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 증대	직무전문가, FDIC 등 총 10명
	KDIC-Highway 연수	•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직급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문화체험, 극기훈련 등의 연수 실시	5개팀 (25명)
	Follow-up 연수	• 입사 5년차 이상 직원들의 유대감 강화 및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도모	1회(15명)
	가정의 날	•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가정친화 및 자기계발 촉진	매주 수요일
다함께 실천 (핵심가치 공유)	정책설명회	• 임원 또는 부서장이 공사의 주요정책에 대해 전 직원에게 설명·공유	22회
	KDIC-다움	• 핵심가치의 주요내용 및 실천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태도를 체화하는 교육형 워크샵 프로그램	2회
	K-Oasis	• 지식경영 관련 지식포털시스템 운영	연중 운영
	파고 TV	• 경영이념, 경영전략회의, 홍보/보도자료 등 경영전략 공유를 위한 VOD서비스 제공연중 운영	연중 운영

나. 예금보험기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공사는 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공동검사 의무화, 단독조사 대상기관 확대에 대응하여 2012년 1월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 조정, 임시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과 업무 처리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는 등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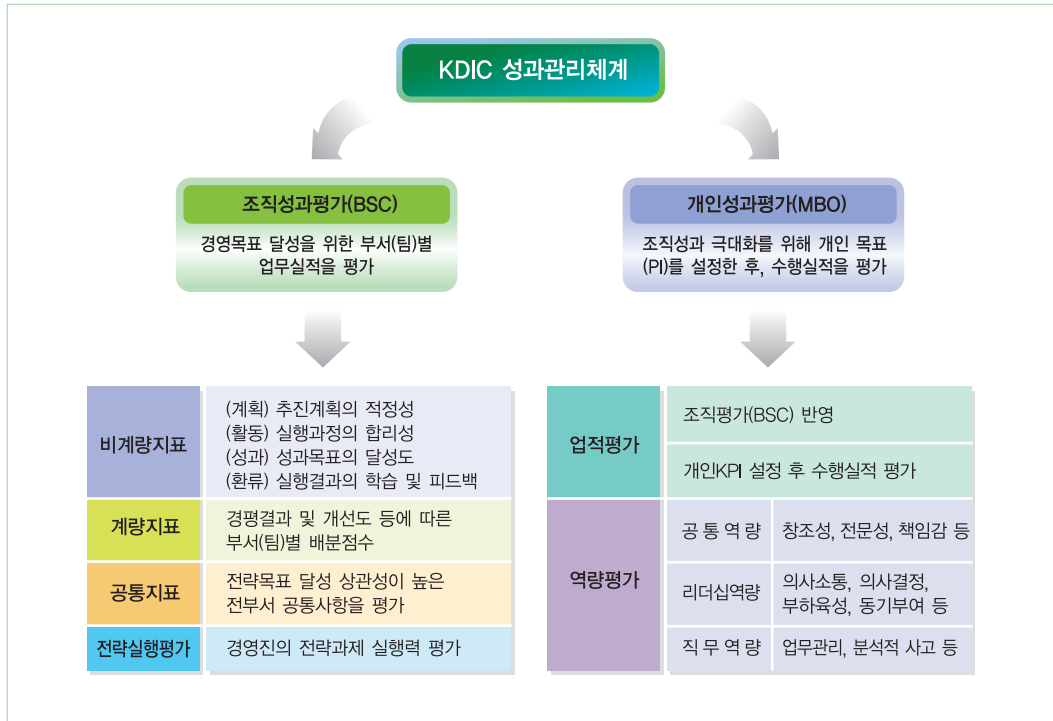
다.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제도 운영

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 말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alanced Score Card; BSC)를 도입하고 2006년 부서 단위, 2007년 팀 단위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성과관리시스템도 개발하였다. 또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조직 성과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전사 전략·목표달성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성과관리체계에 반영한 공사만의 차별화된 리스크 연계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영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노사합의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발맞추어 피평가자인 개인이 평가자와 협의하여 조직 성과 극대화를 위한 업무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수행 실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개인 성과평가제도(MBO)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개인성과평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화 하여 MBO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림 II-2〉 KDIC 성과관리체계도



3.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가. 윤리경영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영의 대표 핵심가치를 TRUST(Transparency, Responsibility, Utility of public, Speciality, Teamwork)로 정하고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체계적 실천을 위하여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윤리경영 4대 전략과제도 설정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동 전략과제의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윤리경영이 정착 및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윤리경영 사이버 연수시간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윤리경영 자가점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의 조직내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상호저축은행 감사대상 건전경영

풍토 조성 워크숍' 개최 및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공사의 윤리경영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윤리경영이 대외에도 확산되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UN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2007년 8월 가입)에 이행상황 보고 및 지식경제부 주관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 참여 등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수준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매년 창립기념일에 '청렴·윤리경영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가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 4월에는 한국윤리경영학회로부터 연기금 운용부문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함은 물론, 2012년 11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KoBEX SM 결과에서 최고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림II-3〉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전략 체계도



나. 사회공헌 활동

(1) 업무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속적 추진 및 확대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뢰에 보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SMART 생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공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 발전시켰다.

특히, 2011년 업무 특성과 연계하여 공사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선정한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SMART 생활금융교육」을 대폭 확대(전년대비 53.9% 증가)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2012년에는 금융정보가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 초등학교,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총 466회(교육인원 92,656명)의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년층 생활금융교육을 위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 개설 등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하여 전국 상인대학(110개)에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인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2)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공사는 2012년 5월 지역 환경 개선 및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9개 기관과 「청계천 자원봉사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협약을 기초로 2012년에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개의 협약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계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삼성화재, 하나은행, 씨티은행, 다동·무교동 번영회와 「다동·무교동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공헌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부터는 동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시, 지역 축제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천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 8월 종로구 통인동에 소재한 통인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매월 1회(마지막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무료 급식 봉사활동 식자재 구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노력해왔으며, 2012년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매주 목요일), 점심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교육기자재 지원 등 자매

결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2012년 한 해 동안 485명이 통인시장을 이용하였으며 동아일보, SBS 등 주요 언론을 통해 공사와 통인시장의 도시락 카페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공사의 이와 같은 활동은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주무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4)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공사는 2012년 중 임직원 기부금(1구좌 5,000원),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및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등으로 총 1억 9,513만원의 「예보사랑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이웃과 공감”, “지역과 공감”, “농촌과 공감”, “환경과 공감” 등 네 분야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으로 1억 5,545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웃과 공감” 활동은 공사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생활금융교육(예금보험제도 등 생활금융 지식 공유)외에 예보꿈나무 장학사업(수도권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10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장애인 결연사업(정신지체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 및 장애인 생활시설인 ‘승가원’에서 봉사활동), 사회복지 단체 등에 대한 성금·물품 후원 사업, 사랑의 헌혈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해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인 KSP사업과 연계하여 탄자니아 나카상궤 초등학교에 교육물품을 지원하는 등 해외 사회공헌 활동도 시작하였다.

“지역과 공감” 분야에서는 무료급식(은평구 소재 사회복지단체인 ‘나눔의 등지’ 급식비 지원 및 배식활동), 1부서 1가정(시설)돕기(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봉사활동 수행), 사랑의 집고치기(‘해비타트 서울 지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전통시장 가는 날, 예금보험제도 안내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자매결연 마을인 충남 예산군 운곡리 사과마을 일손돕기 활동인 1사 1촌 지원사업(“농촌과 공감”),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 쉼터인 청계천 정화활동(“환경과 공감”)도 전개하였다.



〈표Ⅱ-9〉 2012년도 사회공헌 활동 내역

(2012년 12월말 기준, 단위 : 건, 명, 천원)

구 분		활 동 명	참여인원	후원금등	주 기
이웃과 공 감	성금·물품기부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동전 모으기	103	82,328	-
	장학금 지원	수도권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대상(10명)	14	10,000	매년
	장애우 결연	서울정진학교, 승가원 자원봉사	131	548	매월 첫째 목요일
	금융교육	SMART생활금융교육	648	-	
	헌혈	사랑의 헌혈	36	-	연간
	글로벌사회공헌	탄자니아 교육물품 후원	4	5,000	
	개별 봉사활동	-	110	-	
지역과 공 감	무료 급식	은평 나눔의 등지	138	12,400	매월 셋째 화요일
	1 부서 1 가정 돕기	평화모자원 등 24개 가정 및 시설 지원	875	28,940	매월
	사랑의집고치기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 (해비타트와 연계)	10	2,104	분기
	전통시장지원	전통시장(통인시장) 가는 날	485	-	매주 목요일
농촌과 공 감	1사 1촌지원	자매결연마을 일손돕기 (운곡리 사과마을)	240	12,832	반기
환경과 공 감	청계천 정화	청계광장에서 삼일교까지 정화	126	1,295	매월 넷째 금요일
합 계		-	2,920	155,447	-

* 예보사랑나눔기금 결산 기준

4. 중장기 정보화 계획 추진 현황

공사는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영전략 달성과 고객지원 강화를 위한 제3차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2011~2013)을 수립하였으며, ‘금융안정을 선도하는 고객중심의 선진 IT서비스 제공’이라는 IT비전 달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 단계별로 이행 목표를 설정한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의 2단계에 해당되는 2012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이행과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정보화 기반의 경영전략달성 지원」이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별 성과 관리제도, 성과연봉제 등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는 e-HR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고, 예금보험

차등보험료 제도 시행에 대비한 차등보험료를 산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저축은행 리스크감시 모형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였고, 공사 채권발행 증가에 따른 외부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고 채권발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채권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II-4〉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2011~2013)



둘째, 「고객 중심의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 실현」이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예금자 보호제도 및 경제·금융 상식 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온라인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생활금융 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공사 스마트워크 활성화로 원격지 근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원격지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해 PC기반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통합정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가지급금 등 신청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청 화면도 간소화시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시켰다.

셋째,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공사에서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등의 변경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배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를 위하여 공사 업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개인정보 접근기록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DB접근제어 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 인증 획득한 국제표준 ISO20000 인증의 사후심사도 차질 없이 완수하였다.

〈표II-10〉 2단계 (2012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정보화 전략 목표	2단계 (2012년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정보화 기반의 경영전략 달성 지원	• 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	(2012.10 ~ 2012.12)
	• 국제회계보고기준 적용 및 회계시스템 고도화	(2012.12 ~ 2013. 7)
	• 차등보험료율산정시스템	(2012. 3 ~ 2012. 9)
	• 리스크감시 모형시스템 기능개선	(2012. 8 ~ 2012.10)
	• 채권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2012. 3 ~ 2012. 7)
고객중심의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 실현	•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 구축	(2012.10 ~ 2012.12)
	• 통합정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2012. 8 ~ 2012.11)
	• PC기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2012.11 ~ 2012.12)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배포 자동화 시스템 구축	(2012.10 ~ 2012.12)
	• 인터넷 방화벽 기능 강화 등	(2012. 8 ~ 2012. 9)
	• 국제표준 인증 사후심사	(2012. 5)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시스템 개선	(2012. 9 ~ 2012.12)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및 통합PC보안 관리체계 개선	(2012. 9 ~ 2012.12)
	• DB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2012.12)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1.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제고

가. 주요 홍보 추진 실적

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사의 역할·가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대 및 60대 이상 등의 정보취약계층을 2012년도 주요 홍보 타겟으로 선정하고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지상파 3사 채널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익캠페인 TV광고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통합홍보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신문·잡지, KTX 와이드칼라, 버스·지하철, LED 전자현수막 및 옥외전광판 등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 및 후순위채권 비보호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공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원가성 홍보매체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 가계부 및 지방자치단체 반상회보 등에 예금자보호제도 내용을 소개하였고,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제도 세부사항과 관련된 기획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금융기관 영업점에도 홍보동영상을 방영하였다.

그리고 예금보험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타겟을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형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대(대학생)를 대상으로 친숙한 매체인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홍보를 실시하였다. 공사 페이스북을 신규 개설하였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블로그 컬럼 공모전 개최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 및 공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 이어 대학생 광고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20대(대학생)의 예금자보호제도 및 공사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공사는 “서울머니쇼” 및 “부산국제금융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찾아가는 홍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용부스에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금융정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고객 중심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일대일 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연이어 발생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불안감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표Ⅲ-1〉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이미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홍보 이미지			

이밖에도 공사는 초등학생·주부·시장상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주요내용 및 공사의 역할을 알릴 목적으로 재미있고 친숙한 전래동화를 기본 스토리로 하는 홍보만화 ‘알기 쉬운 예금자보호제도’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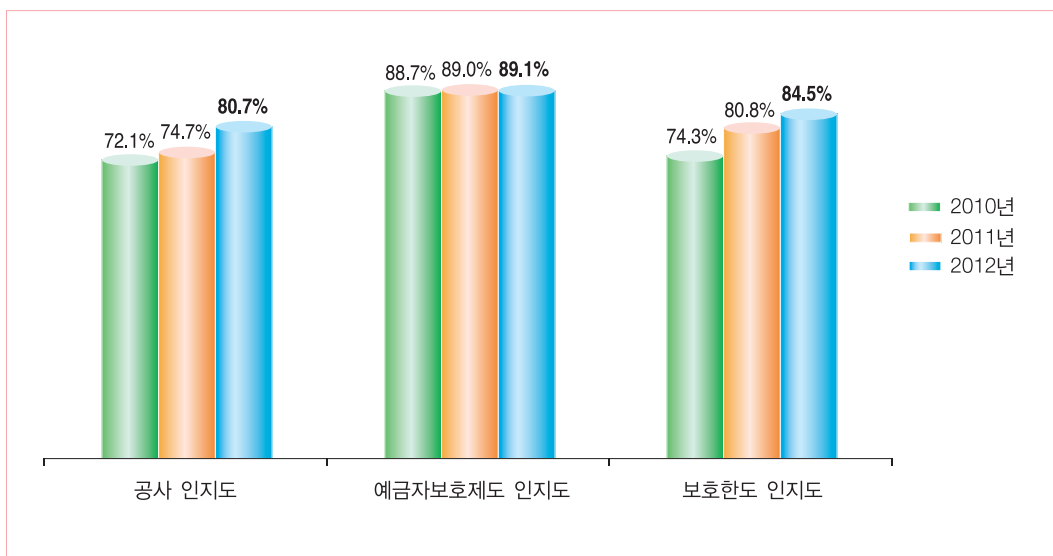
〈그림 Ⅲ-1〉 홍보만화

나.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결과

공사는 매년 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측정된 공사 및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수준을 보면 공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경제교육의 지속적인 확대와 공사 관련 언론보도 증대 등에 따라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도 ‘공사 인지도’는 80.7%로 전년대비 6.0%p 대폭 증가하였고,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는 89.1%로 전년대비 0.1%p,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인지도’가 84.5%로 전년대비 3.7%p 증가하였다.

〈표Ⅲ-2〉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결과



2. 표시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안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 등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 예금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을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공사는 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에 대해 부보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표Ⅲ-3〉 표시제도 현장점검 1인당 영업점 수

구 분	2011년	2012년	증 가
1인당 점검 영업점수	120개	159개	32.5%↑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표시제도 이행여부 점검을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조사 효율성 제고 및 수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부보금융기관 본점과 영업점에 대한 점검항목을 각각 구분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의 자율점검 방식에 의한 사전점검제를 도입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하였다. 2012년에는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을 제공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해당 업무 담당직원 1인당 159개의 부보금융기관 영업점에 대한 표시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업무효율성도 제고하였다.

〈그림 Ⅲ-2〉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



또한 공사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안내자료(포스터, 리플렛, 스티커) 15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모든 부보금융기관 영업점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예금보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본인이 금융기관, 금융상품,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여 보호금액을 모의 산출해보는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를 2011년 11월 공사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3. 생활금융교육 실시

가.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

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부터 초등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초저축은행들의 대규모 영업정지 과정에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통시장 상인, 노년층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1년 6월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한 방문교육, 현장상담, 캠페인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SMART 생활금융교육(안)」을 마련하여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초등학교에 생활금융교육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신청을 받고,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생활금융교육 강사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용돈 관리 및 예금보험제도 등의 내용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전국 106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13회 걸쳐 15,9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2011년 11월 시장경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부터 선진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상인대학에 정규과정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98개 상인대학에서 5,889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상인의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 교재를 제작하여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인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하여 전국 상인대학에 교육기자재(노트북, 빔프로젝트 110세트)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상인대학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인 및 상인대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시장 등의 경우 공사 직원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의 방법으로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공사가 2012년 한 해 동안 초등학생, 전통시장 상인, 자립청소년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금융교육 과정은 466회(교육인원 92,656명)에 이른다.

나. 노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

노년층의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정 등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2년 9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노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생활금융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는 전국 220개 노인종합복지관(노인 회원 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절세상품,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법 등 노년층에 필요한 생활금융지식 및 예금보험제도 안내 등을 위한 노년층 대상 교재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설

공사의 생활금융교육은 방문교육, 캠페인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인력 및 예산의 제한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을 통한 생활금융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공사는 2012년 온라인을 통해 자가 학습이 가능한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 또한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축, 눈높이에 맞춘 계층별 콘텐츠 제공 등을 도모하였다. 동 홈페이지에는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소개 및 안내 페이지를 추가하였으며, 용돈기입장과 생활금융 퀴즈게임을 탑재하여 교육 효과 제고뿐만 아니라 재미 요소도 고려하였다.

〈표Ⅲ-4〉 2012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명)

구 분		횟 수	인 원	주요 교육 내용
교육	초등학생	213	15,904	용돈관리의 중요성, 예금보험제도
	상인대학	98	5,889	보이스피싱예방, 예금보험제도 등
	기 타	5	157	보이스피싱예방, 예금보험제도 등
캠페인	전통시장	143	24,974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예금보험제도 등
	기 타	7	45,73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예금보험제도 등
합 계		466	92,656	-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1. 경영관리 중 여신 고객 등에 대한 불편 해소

2011년부터 이루어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금자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여신 고객들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대출 상환과 관련된 혼란, 대출 만기 연장 중단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 등과 같은 민원이 공사에 접수되었다. 이에 공사는 고객의 범위를 예금자 뿐만 아니라 여신거래자까지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예금자보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표Ⅲ-5〉 여신고객 불편 해소 방안

사 업 명	주 요 내 용	기 대 효 과
예보 관련 여신협의회 구성	예보관련 저축은행의 중복 채무자를 위한 여신협의회 구성	여신 관련 창구단일화
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 제공	만기도래 대출의 연장 대상, 조건 등을 제시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안내	안내문 문자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안내	금리 부담 완화
대출채무자 안내 강화	경영관리 착수시 대출상환 관련 안내문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	연체 등을 방지하여 채무자 피해 예방

‘예보 관련 여신협의회’의 경우, 예보 관련 금융기관간의 동일 차주 또는 동일 담보 여신과 관련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사내 담당 부서 주관 하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여신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창구단일화를 통해 채무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 제공의 경우 연장 대상 및 기간 등을 제시하고, 부실증가 방지 및 기업가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연장기간 등을 적의 조정토록 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여신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다. 영업정지 후 저축은행에서 여신 거래자에 대한 채권채무잔액조회서를 발송할 때 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고금리 대출자에게 타 금융권 저금리 상품을 안내토록 하였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에 예금자 관련 안내와 더불어 여신 고객에 대한 안내를 추가함으로써 예금자 뿐만 아니라 여신 고객도 금융기관 영업정지로 인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예금보험금 등의 안정적 지급 및 서비스 강화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지급요청이 폭주하였고,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가지급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수많은 예금자들이 일시에 몰려 대기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2012년 공사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 등 지급과 관련한 사항 몇 가지를 개선하였다. 우선 6개 시중은행*의 지급창구(각 은행 영업점)를 충분히 확보**하여 가지급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에만 개설하였던 예금보험금 등 지급계좌를 3개 은행으로 확대·개설하고 예비계좌 개설 은행을 마련하여 전산장애 발생 시 등에 대비하는 등 안정성을 대폭 높였다.

* 농협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 338개 지점, 700개 이상의 지급창구를 운영하여 시간당 예금지급처리 능력이 전년대비 62% 증가

또한, 저축은행 예금자 중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이용이 편리하도록 화면 구성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으로 가지급금 등 지급 신청시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비율이 2011년도 대비 약 11%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예금자를 위한 가지급금 등 지급 서비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사는 2012년에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한편, 공사는 예금보험금 등의 안정적인 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예금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상향하였다. 그간 공사의 지속적인 가지급금 지급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약이전이 되지 않아 예금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계약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5천만원 초과예금자들에게는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에 2012년 중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시 5천만원 이하 예금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천만원 초과예금자에게는 보호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하도록 하였다.

특히,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솔로몬 등 3개사와 달리 계약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계약이전 대상 예금자들의 예금을 운용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연휴에

맞추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공사는 부실관련자들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부실에 대한 책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전·현직 임직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예금에 대한 예금보험금의 지급을 보험금 지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보류하여 왔다.

그러나 계약이전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예금보험금대상으로 지급이 보류되었던 전·현직 임직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예금 중 부실책임이 없다고 최종 조사된 예금자의 경우 예금을 보험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계약이전 대상 예금과 비교할 때 금전 손실*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불편을 경감하고자 예금자의 동의하에 지급보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계약이전을 추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질권 설정을 통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하되 부실책임 사유가 없을 경우 질권을 해지하여 약정이율을 적용 받아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계약이전된 경우 약정이자를 보장받으나, 보험금 지급시 이자율의 경우 저축은행 예금계약 상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나 통상적으로 소정이율이 약정이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임

이처럼 공사는 예금보험금 등의 안정적 지급과 예금자 보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금융거래 중단기간 최소화

공사는 2012년 5월 영업 정지된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직후 매각절차를 추진하여, 제3자 또는 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통해 조속히 금융거래를 정상화함으로써 예금자 등 해당 저축은행 거래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후 금융거래가 재개되는데 2~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을 정지하고 주말동안 가교저축은행으로 전산이관 등을 완료하여 월요일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금자의 불편이나 피해 없이 부실저축은행의 정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Ⅲ-6〉 2012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저축은행	정리방식	영업정지일	영업재개일	영업정지기간	비 고
솔로몬	제3자 계약이전	2012. 5. 6	2012. 9.10	127일	영업정지 후 정리절차 추진
한 국	제3자 계약이전	2012. 5. 6	2012. 9.10	127일	
미 래	제3자 계약이전	2012. 5. 6	2012. 9.10	159일	
한 주	가교 계약이전	2012. 5. 6	2012.10.12	127일	
토마토2	가교 계약이전	2012.10.19	2012.10.22	2일(익영업일)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진 흥	가교 계약이전	2012.11.16	2012.11.19	2일(익영업일)	
경 기	가교 계약이전	2012.12.28	2012.12.31	2일(익영업일)	
더블유	가교 계약이전	2012.12.28	2012.12.31	2일(익영업일)	

4. 배당금의 조기 · 극대화 지급 노력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개산지급금을 통해 조기에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파산절차 장기화로 인한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 8월에는 개산지급금에 대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금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하였다.

한편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통상 파산재단의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남은 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한 후 파산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배당금 수령 통지가 불가능한 소재 불명 파산채권자의 배당금과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파산채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 등 '미수령 배당금'에 대해 파산채권자들의 재산 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파산채권자의 주소지를 파악

하여 2012년 상반기 22개 파산재단 46,427명과 하반기 21개 파산재단 19,010명 등 총 65,437명에 대한 주소 보정작업을 실시한 후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새로 파악된 주소지에 배당금 수령 통지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파산채권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미수령 배당금 안내시스템'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2년 226억원(14,830건)의 미수령 배당금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찾아주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하여 2005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파산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미수령 배당금은 총 2,336억원(418,869건)에 달한다.

〈표Ⅲ-7〉 2012년도 미수령 배당금 지급 실적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건수)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합 계
2012년	금액 (건수)	17 (157)	0.1 (157)	0.1 (640)	194 (356)	15 (13,508)	0.003 (12)	226 (14,830)
2005년 8월~ 2012년 12월	금액 (건수)	118 (378)	4 (22,365)	1 (6,866)	694 (17,579)	1,518 (370,164)	1 (1,517)	2,336 (418,869)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2012 IADI

VE TRAINING SEMINAR



제4장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예금보험제도 개선

1. 공사의 사전 위험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2012년 3월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 실시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당초 단독조사 실시대상은 이미 부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사를 통해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저축은행이 “(1)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비율에 2%를 더한 비율 미만, (2)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3) 예금보험공사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 3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사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공사의 요청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단독검사 포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권한을 확보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단독조사 실시대상 범위 확대, 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권 확보 등을 통하여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위험에 대한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준비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는 고정보험료율방식, 즉 모든 부보금융기관이 부실 위험에 관계없이 동일 업권 내에서는 동일한 예금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위험이 낮은 금융기관이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예금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 문제 및 부보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유도과 예금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업계 의견수렴·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전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공사는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의 합동 T/F 운영을 통해 수렴한 업계의견 및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방안 공청회(2011.12.)」 개최 등을 통하여 수렴한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차등평가모형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012년 3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안」을 확정하였다.

동 기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별 부보금융기관별로 차등평가모형에 따라 매년 절대평가를 실시. (2) 평가결과에 따라 1에서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 (3) 차등평가모형은 기본평가 80점 및 보완평가 20점으로 구성. (4) 기본평가부문의 평가 지표는 통계적 검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로서 위기대응능력·건전성 관리능력·손실회복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선정. (5) 보완평가부문 평가지표는 ‘금융당국의 제재현황’ 등 비재무항목지표(10점)와, 기본평가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당해년도의 금융규제환경 변화 등을 추가로 반영한 재무항목지표(10점)로 구성 등이 있다.

현재 공사는 지난 기본방안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들을 마련하여 조만간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2013년 중에는 제도 시범운영을 통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차등보험료율제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G7 중 5개국 등 선진국의 상당수가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시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1.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전망 체계 조사연구

공사는 선진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외부연구논문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등이 자기자본 규제 강화, 체계적 정리제도 마련 등 금융규제체계 전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는 주요국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정책·감독의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그 시사점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저성장 우려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확대 등에 대응하여 금융·경제 현안을 선제적·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표Ⅳ-1〉 2012년 주요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주 제	제 목
금융·경제현안에 대한 연구	• 최근 유로존 체제 위기 확산 및 시사점 • 유로존의 위기대응 내용 검토 및 전망 • 우리나라의 커버드본드 도입 영향 및 시사점 • 이란발 유가 불안 가능성 및 영향 분석 • FDIC 부보은행의 '12.1/4분기 경영실적 • 최근 국내외 채권시장 분석 및 시사점 • 가계부채의 위험요인 분석 및 시사점

주 제	제 목
주요국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규제체계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예금보험제도 변화 및 시사점 •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규제체계 변화 및 시사점 • 美 FDIC, 대형은행 정리계획서(RP) 제출 기준 마련 및 시사점 • 미국 FDIC의 P&A 절차 및 시사점 • 영국 은행 개혁 보고서 주요내용 • 'EU 은행 구조개혁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EU 금융회사 회생 및 정리 지침' 주요 내용 • 은행 자기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 • 영국 금융감독 사전개입제도

2. 연구 결과물 공유 노력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금융안정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외부연구지원 공모논문집”에 수록·발간하여 정책당국, 유관기관, 학계, 언론 등에 배포하였다. 공사는 이와 같은 발간 사업 및 제공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Ⅳ-2〉 2012년 주요 발간물

제 목	주요 게재 논문
금융안정연구 (제13권 1, 2호) 	• 신흥시장 N-SIFI의 식별 및 감독방향 •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I)의 「예금보험제도 핵심원칙」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 은행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배당주 투자는 유효한가 • 증권사 추천종목에 대한 성과분석 •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관계형 대출에 관한 실증분석 • 부도확률 예측에서 미시정보와 거시정보의 역할 • 파생상품 사용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유연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분석 • Cyclical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Loan Provision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제 목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

주요 게재 논문

- 은행의 대출확대가 은행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Bankscope 자료를 중심으로)
-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유형별 부채상환능력 분석
- 저축은행의 위험 투자와 소비자금융시장의 경쟁에 대한 연구
- 대주주 지분과 대출리스크가 저축은행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투자자 보호와 조회공시제도의 역할





국제교류 및 협력

1. IADI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가. 2012년도 IADI ‘올해의 예금보험기구 상’ 수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금융안전망의 중심축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각국 예금보험기구의 국제협의체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IADI는 예금보험 관련 글로벌 표준인 “예금보험핵심준칙 및 평가기준(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and Methodology)”^{*}을 제정하였다. 이는 2011년 2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주요 국제기준 지침서(Compendium of Standards)에 추가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IADI는 국제사회에서 국제기준 제정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국가별 이행 권고사항으로서, 예금보험제도의 목표, 예금보험기구의 책무와 권한 및 지배구조, 다른 금융안전망 참여자들과의 관계, 회원자격과 보호한도, 기금조성, 대국민 홍보, 예금보험기구 및 그 직원에 대한 법적보호, 부실 정리, 예금보험금 지급, 자산회수 등 총 18개항의 준칙(Principle)과 준칙별 평가기준(Methodology)으로 구성됨.

공사는 IADI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국으로서 IADI의 주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그간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3년간 IADI 내 “시스템 위기 대응 조사연구 소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은행과 비은행금융권역 전반을 보호하는 모범적인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통합보호제도 조사연구 소위원회”의 발족을 주도하여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그간 공사의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어, 2012년 10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11차 IADI 연차총회에서 ‘올해의 예금보험기구 상’을 수상하였다. ‘올해의 예금보험기구 상’은 IADI가 매년 자국 내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 분야 국제협력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 기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IADI 전체 회원국의 비밀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한 예금보험기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는 IADI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국으로서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IMF 외환위기 극복과 최근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16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타 예금보험기구의 롤 모델(Role Model)로서 입지를 구축하였던 것이 주요 수상 요인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지식원조 사업으로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 공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신흥국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였던 것도 ‘올해의 예금보험기구 상’을 수상한 주요 원동력이다.



나. IADI 고위급 연수 세미나 개최

IADI는 2007년부터 예금보험기구 등 금융안전망기구의 임원 및 고위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고위급 연수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다. 공사는 IADI 모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참석기구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IADI 고위급 연수 세미나를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초대 IADI 의장인 Jean Pierre Sabourin, 스위스 및 우크라이나 예금보험기구 사장, 미국 및 영국 예금보험기구 고위급 인사 등 25개국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으며, IADI의 대규모 연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다시 한 번 모범적 예금보험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확대

가.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MOU 체결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 및 예금보험제도 현안에 대한 정보 및 인력 교류를 목적으로 해외 예금보험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 MOU를 체결하여 왔다. MOU가 체결되면 상호간의 우호관계 지속을 통해 일회성 교류협력 사업을 지양하고 다각적인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기에, MOU 체결은 교류사업의 핵심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1월 16일 공사는 탄자니아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하였다. 공사와 탄자니아 금융당국은 탄자니아 KSP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여 왔는데,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3월 15일에는 러시아 예금보험원과 기존의 MOU를 갱신체결하였다. 2009년에 체결된 MOU가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 확대 차원에서 갱신체결하게 된 것이다. 또한, 11월 12일에는 우크라이나 예금보험기금과 MOU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터키 예금보험기금과 MOU를 갱신체결하였다. 이러한 MOU 체결을 통해 예금보험제도 현안 및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적시에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 3월에는 대만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MOU에 근거하여 2명의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대만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Global-KDIC KSP) 추진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개발도상국 등 해외 국가들로부터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 등을 배우려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 공사 내부에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 추진단(Global-KDIC KSP*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금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거나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 대해 역량강화 연수와 정책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Global-KDIC KSP)”을 활발히 진행하여왔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년 중 공사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예금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을 전달하는 국제 워크숍과 연수를 실시하였다. 5월에는 중국 인민은행과 발전연구원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전반적인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하였다. 같은 5월에는 대만과 나이지리아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에 따라 두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보험권역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였다. 이밖에도 4월에는 베트남 예보의 요청으로 베트남 예보 사장 및 임직원을 공사로 초청하여 공사의 IT 시스템 운영 사례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4월과 11월 두 차례 공사 직원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베트남 중앙은행 및 개발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지 집합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4월 네팔 중앙

은행 관계자, 7월 태국 중앙은행 관계자, 11월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 등이 공사에 내방하여 공사의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전수 받았다.

또한, 공사는 2010년에 이어 정부의 “개발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에 공사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2012년에도 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공사의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12월에 공사에서 몽골 정책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탄자니아에 대해서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기획재정부의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KSP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 단독으로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설립을 위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2012년 8월 공사는 탄자니아 고위정책결정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세부 관심주제를 확인하고자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수요조사에는 공사 유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고위관계자도 참석하였으며, 공사에서는 국제 업무 담당 이사와 KSP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2012년 9월에는 탄자니아 경제상황, 예금보험기구 설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현지 세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와 공동으로 케냐, 짐바브웨 등 인접국 예금보험기구를 초청하여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효율적 IT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표Ⅳ-3〉 2012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실적

국 가	대상기관	일 자	주요 내용
베트남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4월	• 베트남 예보 사장 등 내방 연수 실시
		4월	• 베트남 중앙은행 임직원 대상 “부실 은행 정리 사례” 강연을 위한 강사 파견
		11월	• 베트남 재무부 및 개발은행 직원 대상 현지 집합교육 강사 파견
몽 골	정부, 국회, 중앙은행	7월	• ADB 컨설턴트 자격으로 “몽골 예보제도 도입” 수요조사 출장 실시 • 몽골 재무부 및 중앙은행 관계자 면담
		11월	• ADB 컨설턴트 자격으로 “몽골 예보제도 도입” 세부실태조사 출장 실시
		12월	• 몽골 정책 실무자 대상 연수 실시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 재무부	11월	• 공사개최 “IADI 고위급 연수 세미나” 참석
		12월	• 공사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실무자 연수 실시
중국	중앙은행	5월	•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 공사 내방 연수 실시
나이지리아	국회 예금보험기구	5월	• 나이지리아 국회의원 및 예보기구 관계자 대상 “통합예보제도” 워크숍 실시
		12월	• 나이지리아 예보 사장의 요청으로 “IADI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강사 파견
케냐	예금보험기구	9월	• 효율적인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숍 실시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기구	11월	• 공사개최 “IADI 고위급 연수 세미나” 참석
네 팔	예금보험기구	4월	• 네팔 중앙은행 임직원 공사 방문 연수 실시
	재무부 및 중앙은행	11월	• 부실은행 구조조정 관련 실무자 연수 실시
대 만	예금보험기구	5월	• 대만 예보기구 관계자 대상 “통합예보제도” 워크숍 실시
우크라이나	예금보험기구	11월	• 우크라이나 예보기구와의 MOU 체결 • 공사개최 “IADI 고위급 연수 세미나” 참석
탄자니아	정부, 중앙은행	1월	• 2011년 탄자니아 KSP 최종보고회 실시 •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면담
		8월	• 현지 수요조사 실시
		9월	• 현지 세부 실태조사 실시
		10월, 11월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실시 • 공사개최 “IADI 고위급 연수 세미나”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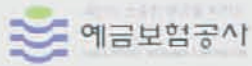
저축은행 조사업무 발전방안

2012. 12. 21(금) 10:30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방향 모색을 위한 Workshop



제5장

리스크 관리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조사 및 공동검사

1. 리스크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가. 리스크 감시 모형 개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평가하기 위하여, 리스크 감시 모형을 통해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재무상태 등을 예측하고 있으며 동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 부보금융기관을 금융권역별 감시 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상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금융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 감시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여 왔다. 최근 위험요인인 저금리·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크 감시모형의 기존 지표를 점검·수정하여 모형의 정합성을 높였다. 특히 2012년에는 위기상황에서의 리스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권별로 내부 리스크요인과 금리인상, 추가하락 등 외부 리스크요인에 대해 각 금융기관의 재무지표 변동을 예측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최근 진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업계 경영환경 변화 및 개별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리스크감시 모형의 변수 및 가중치 등을 변경하는 등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리스크감시모형을 개선하였다.

나. 리스크 감시 역량 강화

공사는 리스크 감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감시 모형 등을 활용한 분석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 실시된 “리스크상시감시교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리스크상시감시교실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2012년에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고 금융시장 주요현안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연수주제를 선정하였고, 이론적인 지식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여 이론과 실무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V-1〉 2012년 리스크상시감시교실 개최내역

구 분	주 제
2012. 4.	•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제도
2012. 6.	• 차등보험료율제의 이해
2012.10.	• 바젤 Ⅲ와 리스크관리
2012.12.	• 금융회사 재무제표 분석 및 분석사례



아울러 공동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유관 기관 간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 경영정보시스템(FIAS) 및 리스크 감시 모형의 개선에 따른 공사 내부 사용자 교육 등을 수시 개최하였다.

또한 리스크 감시 관련 부서에서 생산한 보고서를 사내 포탈에 게시하여 금융업 현황 등에 대한 공사 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상반기 3편, 하반기 3편의 우수 보고서를 선정하여 분석기법 등을 사내 학습동아리를 통해 공유하는 등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업무 법적 근거 확보 노력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주체로서 기금손실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금자보호법」상 공사 설립목적과 개별조항에서는 보험사고 위험관리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동법 제18조에는 이와 관련한 업무가 누락되어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리스크 상시 감시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사 업무의 범위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였다. 2012년 10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2년 12월 말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사의 보험사고 위험 관리 기능이 활성화되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저축은행 단독조사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2011년 9월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는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사전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2년 3월 저축은행에 대한 공사의 단독조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실우려 인정기준이 개정되어 저축은행 중 단독조사 대상이 기존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서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확대되었다.

〈표 V-2〉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련 규정 등 제정 및 역량 강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이후 공사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부보금융기관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공정한 조사결과 심의를 위하여 민간위원 중심으로 「경영위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효율적인 조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조사 착수 전 문제 여신을 필터링할 수 있는 ‘문제여신검색시스템(PLSS)’을 정비하였으며, 조사·공동검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공동검서관리시스템(EIMS)’을 신규 구축하였다.

조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전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담당 부서에는 회계법인 실무경험자를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조사에서 IT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전산 실무경험자 2명을 IT 조사 전담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였다.

아울러 저축은행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사 절차 및 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중요한 흠결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공사 사내 변호사가 독립적 입장에서 저축은행 이해관계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저축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 관련 비용은 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고자 '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를 완비하였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명 및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 임직원이 관련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사 및 공동검사 실시

가. 저축은행 단독조사 실시

2012년 하반기에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특히, 금융감독원 검사와 공사의 단독조사가 중복될 경우 저축은행 임직원의 조사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징구하였으며, 이중 금융감독원의 기(既)검사, 공동검사 대상 등을 제외하고 8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저축은행의 경우 증거를 유도하였으며, 보험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3개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나. 공동검사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

공사는 2011년 9월 총리실 금융감독혁신 TF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동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및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다. 동 법개정을 통하여 공사는 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간접적인 시정조치 권한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송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표V-3〉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 비교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감사요청) 〈 <u>신 설</u> 〉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감사요청)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혁신 TF는 부실화가 진행될 경우 대형 기금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의무적으로 매년 공동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사는 2012년 2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MOU’를 개정하여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과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공동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2012년 중 6개 계열저축은행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표V-4〉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적

(단위: 건)

연도	2002 이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실적	1	0	6	8	11	12	9	15	24	31	9	126

4. 상시 감시 기능 활성화

공사는 2006년부터 리스크 감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상시 감시 업무수행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부보금융기관 보험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사 내부에 “상시감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공사는 “상시감시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시감시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동 방안에 따라 부서별 의무 상정 안전 수를 확대하여 폭넓은 범위의 안전을 논의하였고, 우수안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2012년에는 금융권역별 주요 리스크,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총 14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유관 부서간 협력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업무 추진력을 제고하였다.

한편, 공사는 2004년 1월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대응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9월 공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각 기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융정보 공유 범위 등을 기존 MOU보다 확대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새로이 체결 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공유대상 정보의 명확화 및 공유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동 양해각서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 19건을 한국은행에 처음으로 제공 하였으며, 2012년에는 3건을 추가하여 22건을 제공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에도 2011년 대비 3건이 추가된 29건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2012년 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48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272건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제공받아 이를 상시감시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사 등 금융정책 유관기관간 업무 협의체인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외환시장안정협의회, 금융업무협의회를 통합·개편하여



부기관장급 상설협의체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거시전전성 점검 및 금융정보 공유·공동검사 업무 협의 등을 통하여 금융정책기관 상호간 협력강화를 도모하고, 향후 금융, 외환 분야 리스크 요인 등 거시전전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본격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위험을 적절히 감시하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별 또는 금융업권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는 “전담데스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리스크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리스크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생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분석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리스크 감염 경로 등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 중 시사성이 높은 상시 감시 결과를 요약·정리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KDIC 금융현장정보”)를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학계, 언론계, 부보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유럽 재정위기 및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위험요인에 대해 조기 정보하고 정책수립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상시감시 체계를 효율화하고, 서면분석과 조사·공동검사 등 현장확인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위험 분석 및 저축은행업권 경영위험 전망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 관리강화 요청 공문 발송 및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위험감축을 유도하였다. 또한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공동검사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 모의점검을 실시하여 현장확인에 대비하였다.



5. 시장친화적 리스크 감시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 분석과 이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감시 등을 위해 “금융리스크리뷰誌”(계간지)를 발간하였다. “금융리스크리뷰誌”에는 공사가 생산한 리스크 분석 정보 및 학계와 금융시장 전문가가 기고한 리스크 관리 기법 등을 수록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국회, 학계 및 부보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였다.

〈표 V-5〉 2012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비 고	주 요 내 용
2012년 봄 호	- 美 FDIC, 대형은행 정리계획서(RP) 제출 기준 및 시사점 -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 및 리스크관리
2012년 여름호	- 우리나라의 커버드본드 도입 영향 및 시사점 - BaselⅢ 도입의 영향과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2012년 가을호	- 국내 은행지주회사 현황 및 리스크 분석 -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2012년 겨울호	‘EU 금융회사 회생 및 정리지침’ 주요 내용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생명보험 산업에 대한 시사점

아울러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상시 감시를 통하여 생산된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정보를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경영컨설팅을 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였다.

또한, 부보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계금융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요인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상시감시포럼을 개최하여 리스크관리기법 등에 대한 금융업 실무지식을 공유하였다.

2012년 중 공사는 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내부직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한 결과 컨설팅 만족도가 2011년 대비 상승하였다.

공사는 앞으로도 검사·조사업무와 더불어 컨설팅 및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리스크 감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6. 저축은행 뱅크런 대응

2011년에 진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는 2012년 1월 “2012년 저축은행 뱅크런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저축은행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뱅크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뱅크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부실 징후 저축은행의 예금인출동향 및 저축은행 관련 언론보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인지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응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등 뱅크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뱅크런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예금자 응대 인력을 파견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도해지로 인한 예금자의 이자손실 및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를 방지하였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1. MOU 체결 및 점검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02년 4월 이후 제주은행 등 8개 금융회사를 매각 또는 합병시킴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회사와의 MOU를 해지하였으며, 2012년 말 현재 우리 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및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금융회사와 체결한 MOU를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의 2011년도 4/4분기부터 2012년도 3/4분기까지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해당 금융회사 모두 MOU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사전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MOU 체결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점검결과 해당 금융회사의 개선·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재무부문과 관련하여, 2012년도 1/4분기 MOU 점검결과 경남은행에 대해 자산증가에 따른 부실여신 발생 시 귀책여부에 따라 책임을 묻는 여신프로세스 정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향후 경기 둔화로 조정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한 1인당 조정영업이익 및 판매관리비용률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2012년도 2/4분기 MOU 점검결과 광주은행에 대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정영업이익 증대 대책 및 판매관리비용률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순이자마진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한편 수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해 연체 가계대출에 대한 정리 및 가계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운용자산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재무부문과 관련하여, 2011년도 4/4분기 MOU 점검결과 우리은행에 대해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과 연계한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 증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2년도 2/4분기 점검결과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임직원들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MOU 목표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미달성 시 귀책사유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고, 목표를 달성했다라도 사전적인 리스크관리 활동 등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표V-6〉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추가·수정 내역

(2012년 12월말 현재)

금융기관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우리금융지주	2001. 7. 2	2003. 1.22		
우리은행 (舊한빛은행)	1999. 1.22 ¹⁾ (2000.12.30)	2005. 3.23 2007. 3.28 2009. 3.30 2011. 3.30	2004. 9.22 2007.12.26 2010. 3.23	-
광주은행	2000.12.30	2011. 3.30		
경남은행	2000.12.30	2012. 3.29		
수협 신용사업부문	2001. 4.25	2005. 3.23 2007. 3.28 2009. 3.30 2011. 3.30 2012. 3.29	2003. 7.12 2003. 7. 9 2005.12.21 2007.12.26 2010. 3.23	-
서울보증보험	2000. 4.12 ¹⁾ (2001. 6. 9)	2005. 6.22 2007. 7.18 2009. 6.10 2011. 6. 1 2012. 6.12	2002. 7.10 2006. 6.21 2007.12.26	-
제주은행	2000.12.30	-	-	2002. 4.29 (신한지주 앞 매각)
서울은행	2000.12.30	-	2001. 6.29	2002.12. 1 (하나은행 앞 매각)
조흥은행	1999.11.12 ¹⁾ (2002. 1. 3 ¹⁾)	-	-	2003. 8.19 (신한지주 앞 매각)
대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5.31 (하나은행 앞 매각)
한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3.31 (舊동원지주 앞 매각)
대한생명	2000. 4.12 ¹⁾ (2001. 9. 5)	-	-	2002.12.12 (한화컨소시움 앞 매각)
우리카드 (舊평화은행)	2000. 6. 7 ¹⁾ (2000.12.30)	2003. 6. 4	2002. 3.25	2004. 3.31 (우리은행 합병)
우리증금	2000.12. 9	-	2001. 6.29	2003. 8. 1 (우리은행 합병)

주 : 1) 해당 기관, 공사,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 3자간 약정 체결

2. MOU 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 합리적인 MOU 목표 부여

공사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MOU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목표부여방식을 개선(2011년도 부터 적용)하여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한 2012년도 MOU 재무비율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부여하였다. 특히 MOU 재무비율 목표 중 판매관리비용률 및 경과지급경비비율에 대한 목표 부여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받은 연차보상금 과다지급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판매관리비 및 지급경비에서 차감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로 하여금 관련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나. MOU 체결 금융기관 경영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

공사는 2012년 중 MOU 체결 금융회사와 CEO 간담회 16회, 임원진 간담회 19회, 실무자 간담회 41회 등 총 76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11월에는 MOU 업무 관련 실무자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사와 MOU 체결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및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이 MOU 체결 금융회사 경영진 등과의 경영협의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금융시장 상황 및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대를 꾸준히 형성하고 있다.

다.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 지원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와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사는 2012년 중 MOU 체결 금융회사의 이행부진 사항 등에 대한 상시감시 분석자료 및 구체적이고 적시성 있는 현안 정보 등 총 45건을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등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6장

부실금융기관 정리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제2절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가교저축은행 등 관리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별자산의 관리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1.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2011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동시다발적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2012년도에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상반기 4개사, 하반기 4개사가 영업 정지되었고 이에 공사는 관리인 및 관리보조인을 파견하여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모두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되어 현재는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해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영업 정지된 16개 저축은행 중 현대증권으로 M&A된 대영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2011년 및 2012년 중 모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이 설립되었고 2012년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도 2013년 중에는 파산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표VI-1〉 2011년 이후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저축은행명	영업정지일	현재상태(인수자)	계약이전일	파산선고일
삼 화	2011. 1.14	제3자 계약이전 (우리금융저축은행)	2011. 3.16	2011. 6. 24
부 산	2011. 2.17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술저축은행)	2011.11.23	2012. 3. 7
대 전	2011. 2.17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나래저축은행)	2011. 9. 5	2012. 2. 2
부 산 2	2011. 2.19	제3자 계약이전 (대신저축은행)	2011. 8. 26	2012. 3. 7
중앙부산	2011. 2. 19	제3자 계약이전 (대신저축은행)	2011. 8. 26	2012. 2. 23
보 해	2011. 2. 19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나래저축은행)	2011. 9. 5	2012. 3. 5
전 주	2011. 2. 19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쓰저축은행)	2011. 9. 5	2012. 2. 23
도 민	2011. 2. 22	제3자계약이전 (대신저축은행)	2011. 8. 26	2012. 3. 27
경 은	2011. 8. 5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술저축은행)	2011.10.19	2012. 6. 21
토 마 토	2011. 9.18	제3자 계약이전 (신한저축은행)	2012. 1. 2	2012. 8. 31
프 라 임	2011. 9.18	제3자 계약이전 (BS저축은행)	2012. 1. 2	2012. 9. 7
파 랑 새	2011. 9.18	제3자 계약이전 (BS저축은행)	2012. 1. 2	2012.10.30
제 일	2011. 9.18	제3자 계약이전 (KB저축은행)	2012. 1. 13	2012. 9. 7
제 일 2	2011. 9.18	제3자 계약이전 (하나저축은행)	2012. 2. 8	2012. 9. 7
에 이 스	2011. 9.18	제3자 계약이전 (하나저축은행)	2012. 2. 8	2012. 9. 26
대 영	2011. 9.18	M&A (현대저축은행)	2011.11.21 (영업개시일)	M&A
솔 로 몬	2012. 5. 6	제3자 계약이전 (우리금융저축은행)	2012. 9. 5	-
한 국	2012. 5. 6	제3자 계약이전 (하나저축은행)	2012. 9. 5	-
미 래	2012. 5. 6	제3자계약이전 (친애저축은행)	2012.10. 5	-
한 주	2012. 5. 6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나래저축은행)	2012. 9. 5	-
토마토2	2012.10.19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술저축은행)	2012.10.19	-
진 흥	2012.11.16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한별저축은행)	2012.11.16	-
경 기	2012.12.28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한솔저축은행)	2012.12.28	-
더 블 유	2012.12.28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성저축은행)	2012.12.28	-

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체계적 경영관리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체계적 경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관리 TF라는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2011년 10월에 설치·운영하여 경영관리 인력 및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경영관리 TF에서는 경영관리 파견 인력이 해당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업무 참고서 및 ‘저축은행 경영관리 초기 주요 업무 처리요령’ 소책자를 2012년 5월에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각 저축은행에 업무지도문 등을 통하여 경영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저축은행별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경영관리 파견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2년에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는 자산규모 및 지점 개수에 근거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총 168명의 인력이 파견되었다. 동 파견 인력에는 기간제 검사역 98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일반 은행권 및 공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퇴직한 금융전문가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에 숙련되어 있어 경영관리 업무가 신속히 안정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표 VI-2〉 2012년 영업정지 저축은행별 경영관리 인력 파견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영업정지 저축은행	공사 내부 인력	기간제 검사역	합 계
솔로몬	17	30	47
한국	13	27	40
미래	18	28	46
한주	5	1	6
토마토2	4	4	8
진흥	3	3	6
더블유	7	-	7
경기	3	5	8
합계(8개사)	70	98	168

또한 경영관리 TF에서는 가지급금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인근 시중은행에서 예금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최고 4천 5백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특히, 각 시중은행별로 전담창구를 통해 개별 대출 상담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2012년 하반기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토마토2·진흥·더블유·경기)의 경우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의 도입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이 영업정지와 동시에 계약이전 되면서 가자금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예금담보대출 역시 알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표VI-3〉 예금담보대출 알선 실적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출 건수	금액	예금담보대출 취급은행
솔로몬	215	37	농협·국민·신한·우리·기업·하나
한국	83	12	농협·국민·신한·우리·기업·하나
미래	93	19	농협·국민·신한·우리·기업·하나
한주	23	5	농협·국민·신한·우리·기업·하나
합계 (4개사)	414	73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가교저축은행 등 관리

1. 부실저축은행의 신속한 정리

가. 2012년 상반기

2012년 5월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이 정지되었다. 이에 공사는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영업정지 즉시 재산실사 등 정리절차를 추진하였다. 한편 동 저축은행들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회사, J트러스트를 각각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20개의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고, 다수의 부실저축은행이 존재하여 저축은행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약이전 대상자산을 재구성하고 입찰참가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을 성공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2012년 9월에 솔로몬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한국저축은행은 하나저축은행에 일부 자산·부채가 계약이전되었고, 미래저축은행은 인수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여 2012년 10월에 친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었다. 한편, 한주저축은행은 매각이 유찰되어 기존 가교 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였다. 따라서

2012년 상반기에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이후 3~4개월 이내에 정리가 마무리되었다.

〈표Ⅵ-4〉 2012년 상반기 부실저축은행 정리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약이전일	인수금융기관	정리방식
솔로몬	2012. 9. 5	우리금융저축은행	제3자 계약이전
한국	2012. 9. 5	하나저축은행	제3자 계약이전
미래	2012.10. 5	천애저축은행	제3자 계약이전
한주	2012. 9. 5	에나래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나. 2012년 하반기

2012년 하반기부터는 처음으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는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여 월요일 오전에 영업을 개시하는 제도이다. 2005년 이후 공사는 가교저축은행을 통하여 신속히 영업을 재개하여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부실금융기관 결정 후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시까지 영업을 정지되어 예금자들의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동 방식 도입으로 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저축은행은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 및 주말동안 가교 계약이전 절차를 마무리하여 각각 가교저축은행인 예술, 예한별, 예한솔, 예성저축은행으로 이전되어 월요일에 영업재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가 이루어졌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정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계약이전까지 정리절차가 약 2~3개월 내에 마무리되어 정리 소요기간이 상반기 보다 1개월 이상 단축되었다.

〈표Ⅵ-5〉 2012년 하반기 부실저축은행 정리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약이전일	인수금융기관	정리방식
토마토2	2012.10.19	예술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진흥	2012.11.16	예한별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경기	2012.12.28	예한솔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더블유	2012.12.28	예성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2. 공사 관리 저축은행의 효율적 관리

가. 가교저축은행

2012년 현재 가교저축은행은 예쓰, 예나래, 예솔, 예한별, 예한솔, 예성 등 총 6개로서 이들은 조기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직이므로 중장기 경영전략 및 Business 모델 수립 등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체제 확립이 곤란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직원이 여러 부실저축은행 출신으로 구성되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예쓰, 예나래, 예솔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한도 준수로 인해 적극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계약이전시 순자산 부족분만큼 현금 출연 등에 따른 현금성 자산이 과다하여 역마진을 실현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는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가교저축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공사 전담조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가교저축은행 설립 직후 경영환경, 재무상태 및 영업계획 등을 반영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매월 경영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월별 실적 등 주요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여신관리 등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을 주선하고 있으며, 공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가교저축은행 자체적으로도 신규여신 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적정 평가 시스템도 운용하고 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 운용 및 영업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12년 예나래저축은행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예쓰, 예솔 저축은행은 손실규모가 축소되어 조기 흑자전환이 기대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계속된 불황 및 매물 과다로 인한 인수 수요 부족 등으로 가교저축은행 등 공사 관리저축은행의 시장매각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므로 일시에 저축은행 매물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매물을 분산하여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등 매각가능성을 제고한 결과 2012년 하반기에는 예한별저축은행에 대해 다수의 예비인수자가 참가하여 신한금융지주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계열저축은행

2012년 현재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은 솔로몬 계열의 부산·호남 솔로몬

저축은행, 한국 계열의 영남·진흥·경기 저축은행, 토마토 계열의 토마토2 저축은행 등 총 6개이며, 매각 등 정리 완료시까지 기업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고 금융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전담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에 의한 경영진단을 추진하고 경영환경과 재무상태 등 당해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실행과제 추진실적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주주의 영향을 배제하고 기업가치 유지와 원활한 매각 준비를 위해 경영진을 금융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였으며, 영업 정지된 母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부산·호남 솔로몬 저축은행은 각각 해솔저축은행 및 한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토마토2, 진흥, 경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토마토2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으로, 진흥저축은행은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경기저축은행은 예한솔저축은행으로 각각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통해 계약이전하였다. 그 외 계열저축은행인 부산·호남솔로몬저축은행 및 영남저축은행은 시장상황 및 경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각 완료시까지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절차 도입

기존에는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 후 정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리할 경우 예상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더불어뱅크런 발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되어 예금자와 여신거래자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지역금융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규영업 중단과 여신 사후관리 애로 등에 따른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공사의 기금손실도 확대되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후 즉시 정리절차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과거 평균 10개월이었던 정리기간을 3~4개월로 대폭 단축하였으나 최소 3달 이상의 영업정지는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FDIC와 같은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정리절차 노출로 인한뱅크런과 기존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이 우려되었다. 이에 공사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먼저 뱅크런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예금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점포에 현장 대응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예금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켰다. 또한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여 예금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시적인 불안 심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장혼란 및 뱅크런 발생 우려를 감안하여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리절차를 추진할 경우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부과시 기존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토마토2, 진흥, 경기 저축은행의 경우 임원을 외부전문가로 교체하고 감독관 등의 관리인력을 조기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더블유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시 기존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법 행위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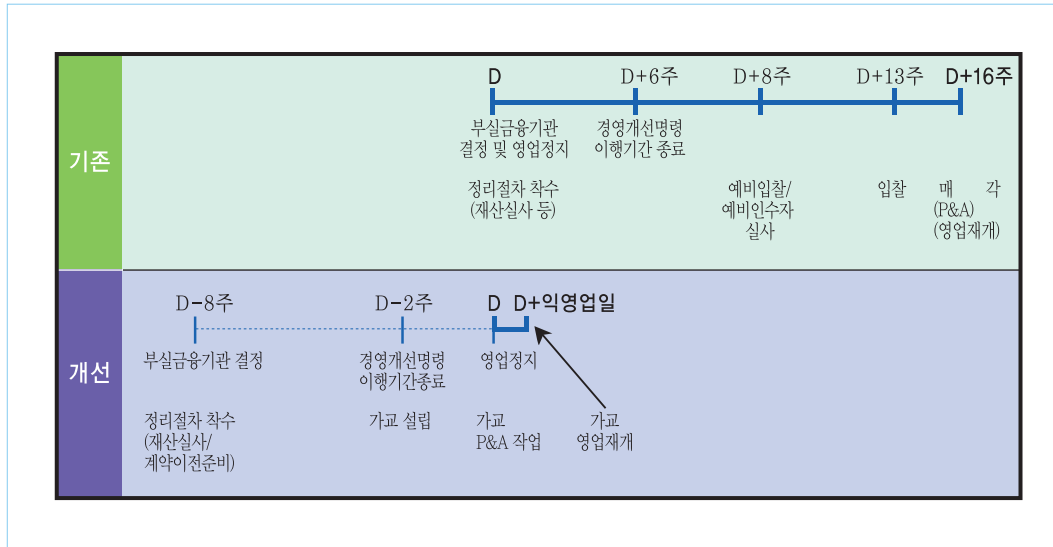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리절차를 추진하더라도 뱅크런이나 기존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차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감독당국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설득 하였다. 특히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예금자들의 불편 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금자들에게 보여줄 경우 향후 부실저축은행 정리가 금융시장의 큰 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공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2012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저축은행은 금융거래 중단 없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 및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월요일 영업재개 방식은 영업 정지 기간을 2일로 대폭 감소시켜 공사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FDIC와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기존 평균 4개월이 소요되던 부실저축은행 영업재개 기간이 영업정지 후 즉시 금융거래가 가능한 방식의 도입으로 익영업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장기간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한 예금자 등 거래자들의 불편 및 피해가 대부분 해소 되면서 금융시장 혼란없이 부실저축은행을 정리 하게 되었다. 또한 영업을 계속됨에 따라 영업 중단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서민금융이 위축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VI-1〉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비교





부실금융기관 특별자산의 관리

1. 특별자산 현황

가. 개 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 저축은행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2012년에 총 8개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부과받음에 따라 이들 부실저축은행의 자산이 대거 특별자산으로 편입되어 공사는 2012년 말 현재 관련 대출채권 기준 총 7.9조원 규모의 특별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별자산은 대출 취급과정에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차명으로 SPC를 설립하고 이들 SPC에 대출을 실행하여 국내외에서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산으로 물건 상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인의 법률분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 및 고가의 외제차량 등 종류도 다양하여 이들 자산을 고유한 특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자산가치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특별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전담 부서(특별자산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Ⅵ-6〉 특별자산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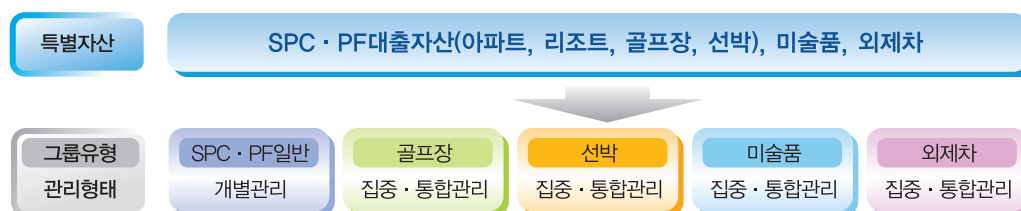
자 산 유 형		자 산 규 모
SPC/PF 관련 대출	아파트 등 개발	5.1조원 (신안군 개발사업 등)
	골프장 (부지 포함)	0.9조원 (아름다운CC 등)
	해외투자	0.7조원 (캄코시티 등)
	선박투자	0.5조원
	기타자산	0.7조원 (서신평주식 등)
소 계		7.9조원
미술품 등 유체동산		미술품, 차량 등 1,470점(대)

나. 특별자산 관리현황

특별자산 관리 전담부서는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는 시점부터 특별자산 관련 대출의 취급 과정, 권리관계분석 및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현재의 자산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자산 가치의 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가치유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인·허가 및 사업권 만료 임박 사업장 등 자산가치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특별자산에 대한 회수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회수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표Ⅵ-7〉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2. 특별자산 회수극대화 추진

가. 회수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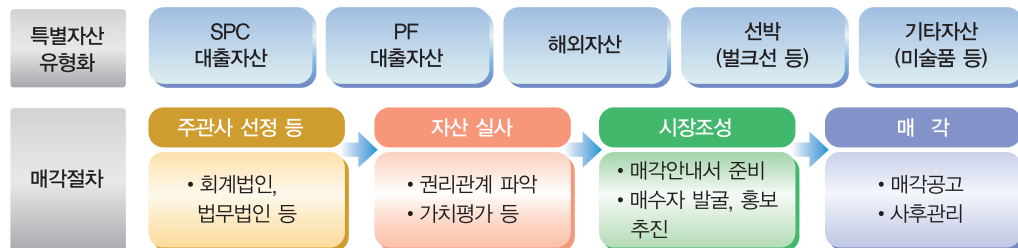
공사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자산에 대해 당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부터 회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파산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특별자산의 회수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 등 회수전략을 수립하고, 이어서 대상자산에 대한 매각공고 및 입찰실시 등 매각 본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매각완료 자산에 대한 입금관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4단계의 단계별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Ⅵ-8〉 특별자산 4단계 회수관리 체계



또한, 조사결과 분류된 특별자산을 자산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유형화시킨 대상 자산에 따른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집중도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Ⅵ-9〉 특별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한편, 특별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금융계,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매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특별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중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외적으로는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비리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압수자산을 신속히 인수하여 보전조치를 취하고, 관할법원에는 공사의 특별자산 관리현황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자산의 원활한 관리 및 회수를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등 해외 투자 특별자산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행정처리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는 외교통상부 및 현지 대사관 등의 업무협조를 구하는 등 해외에 있는 특별자산의 회수를 위하여 대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 회수절차

특별자산은 당해 사업의 특성과 담보물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수립한 뒤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공개 입찰 등을 통해 회수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특별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최적의 회수방안 수립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거쳐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석한 뒤, 사업장별 또는 자산별 특성에 맞춰 수립된 회수 방안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다.

〈표Ⅵ-10〉 매각 대상자산별 외부전문기관 유형

자산유형 주관사 등	사업부지·주식 등 회계법인·증권사	선박 선박 브로커리지	미술품 경매전문사	외제차 등록대행사 경매전문사
---------------	-----------------------	----------------	--------------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PF 등 특수 사업장에 대한 청산가치 및 계속사업가치를 산출하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계속여부를 판단하고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대위변제 후 직접 매각하거나, 신탁사 공매, 법원 경매, 대출관련자와의 상환협약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사전마케팅의 일환으로 잠재매수자를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주행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잠재매수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시켜 매각성사가능성을 제고

하는 한편, 미술품의 경우에도 경매 전에 주요 거점지역에서 순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매각과정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은 분기단위로 측정되어 평가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법률상 다툼 등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단이나 물상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또는 채무의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 회수실적

공사는 특별자산의 회수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2년에 총 1,709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였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부지 등 핵심자산의 매각, 주식 등 지분의 처분, 협상을 통한 연대보증인의 상환 및 미술품 등 유체동산의 경매 등 특별자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회수유형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Ⅵ-11〉 회수유형별 실적

(단위 : 억원)

회 수 유 형	사 업 명	회수실적
사업부지 매각	전남 영암 조선소 부지 등	519
주식매각	한국종합캐피탈, 서울신용정보 주식 등	381
유체동산 경매	미술품, 외제자동차 등	100
제3자 대위변제	호텔신라 제주 카지노	117
연대보증인 상환	강원 삼마치리 골프장	100
횡령 등 회수	신안군 개발사업 등	492
합	계	1,709



파산관재인·경

예금보험공사

2012. 8.24(금)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 7 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제1절 파산재단 관리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파산재단 관리

1. 파산재단 관리 현황

가. 공사의 파산관재인 역할

200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는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 법원의 허가권, 감사위원의 동의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부칙 제3조는 “동법 시행 당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부보금융기관 파산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추가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2월 개정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에도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현재 전국 51개 부보금융기관 파산재단에 공사 파산관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임되어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자금 등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Ⅶ-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전체 파산재단 ¹⁾	파 산 관 재 인		
		공사 단독	변호사 단독	공 동 ²⁾
파산재단수	51	48	-	3

주 : 1) 법적종결재단(421개) 제외, 공적자금 미투입된 고려·동서증권 파산재단 및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 제외

2) 공사(또는 직원)가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

나.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공사는 2007년 7월부터 지역통할책임자 제도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파산재단을 8개 광역권 별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 1인이 동일 광역권내 수개의 파산재단을 맡아 1개의 사무실에서 이들 파산재단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파산재단 직원 및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금 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무실 통합에 따라 임차비용, 건물관리비,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 등 파산재단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교체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2012년에도 파산관재인 간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파산관재인의 근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파산관재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파산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의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관재인과 파산재단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이에 따라 파산재단직원이 부동산 매각, 부실채권 회수업무 등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실시하였으며, 자금 회수율 및 경비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파산재단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실적이 부진한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해당 파산관재인을 교체하고 있다.

다. 채무조정 활성화

공사는 파산재단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2010년부터 “파산재단 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방안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파산이 예상되는 일반법인의 채무조정을 허용하였으며, 소액채무자 중 재산이 없는 급여 생활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12년 3월에는 그간 “총채무액의 10%를 상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전결로 3개월 까지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던 것을 “대출원금의 5%를 상환하는 경우”로 일부 개정하였고 “소규모 법인채무자의 채무감면”에 대하여 기존의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기준」을 일부 신설하였다. 아울러 그간 공사 승인에 의한 자산상각을 파산관재인 전결로 변경하는 내용의 「파산재단 보유자산 상각 및 포기기준」도 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공사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채권회수와 함께 파산채권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지원 자금 회수 등 파산채권 확보를 극대화 하고자 함이었다.

2. 자산환가 및 배당 극대화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 중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의 개별매각을 지양하고 자산유형별로 통합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공사 홈페이지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정보 안내” 코너를 통해 부동산 수요자의 공매물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에 대해 2012년 중 9회의 합동공매를 실시 한 결과 총 61건, 355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파산재단 보유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없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파산재단별 개별 매각이 용이하지 않아 케이알앤씨(KR&C)*와 합동으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2012년 중 3회의 공개입찰 등의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 결과 총 3건, 8백만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 케이알앤씨(KR&C)는 한아름중금·한아름고금을 흡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정리금융공사(RFC)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2차, 2008.8.)」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로 전환(2009.11.)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회수의문, 추정손실, 비업무용 부동산 등) 등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 조기 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단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 등을 수행

또한 파산재단 보유자산 중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자산(골프·콘도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회원권 거래소를 통한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2012년 중 총 14건, 34억원의 매각 실적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자산관리시스템(FAST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해 파산재단 자산의 유형별 보유현황 및 매각대상 자산 등을 상시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파산재단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파산재단의 파산채권 관리 및 배당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전산시스템(CDIS)”을 200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동 시스템을 통해 재단별로 연간 배당 목표액을 부여하고 이를 확인 및 독려함으로써 배당 관련 업무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Ⅶ-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부 동 산	합동공매 실시건수	10	11	9
	매각건수 (금액)	58 (561)	42 (231)	61 (355)
비상장주식	합동공매 실시건수	4	4	3
	매각건수 (금액)	5 (420)	4 (1)	3 (-)
골프·콘도 회원권 등	매각건수 (금액)	47 (4)	9 (52)	14 (34)

공사는 이처럼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등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3. 파산재단의 합리적 종결 추진

공사는 파산재단을 파산초기재단, 자산집중관리재단, 소송집중관리재단, 종결준비재단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자산환가가 대부분 완료되고 소송 실익이 없는 파산재단 등을 종결준비재단으로 선정하여 관할 법원의 허가(협의)를 통해 잔여자산 평가·매각과 최후배당을 거쳐 종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제되어 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파산재단을 조속히 정리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472개 파산재단 중 421개 파산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51개 파산재단도 잔여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종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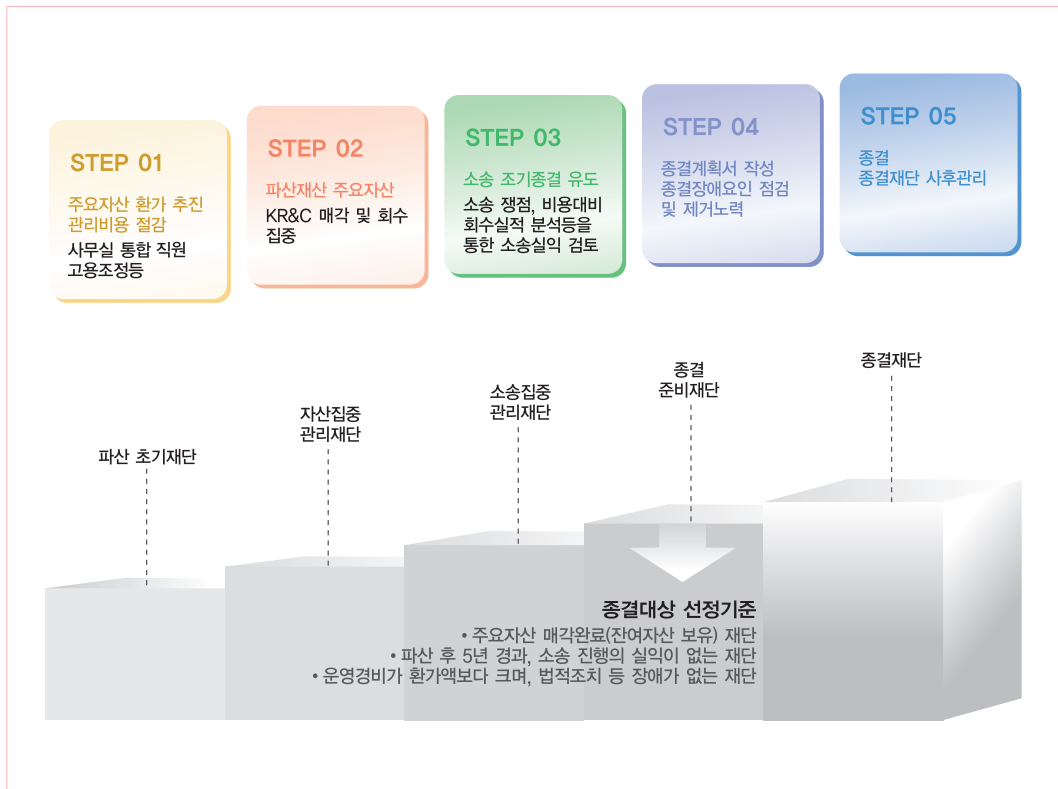
한편, 파산이 종결된 부실금융기관의 기록보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결 파산재단별로 파산 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및 중요 보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기록한 「파산업무수행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및 관련 기관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Ⅶ-3〉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총 파산재단 (A)		5	10	4	22	106	325	472
종결	종결재단 (B)	3	10	4	9	71	324	421
	종결율 (B/A×100)	60	100	100	40	66	99	89
진행재단 (A-B)		2	0	0	13	35	1	51

〈그림 Ⅶ-1〉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1.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현황

공사가 정리금융기관을 통해 인수한 자산은 2012년도 281억원(인수액 기준)을 포함하여 2012년 말까지 총 53조 5,253억원(인수액 기준)이다.

제일은행 매각 시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하지 않은 자산,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자산, 기타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인수 자산의 인수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공사(RFC, 現 KR&C로 전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일은행으로부터 7조 8,549억원, 5개 인수은행(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으로부터 1,588억원, 5개 생명보험회사(국민·동아·태평양·한덕·대한)로부터 3,550억원, 3개 금융투자사(한투·대투·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1조 3,072억원, 460개 파산재단으로부터 3,472억원, 30개 저축은행(한마음·한중·아림·좋은·대운·홍익·경북·현대·분당·전북·오피·전일·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경은, 에이스, 제일, 제일2, 진흥, 토마토, 토마토2, 파랑새, 프라임, 한주, 경기)으로부터 5,127억원, 한아름중금 및 한아름금고 흡수과정에서 42조 9,895억원 등 2012년 말까지 총 53조 5,253억원(인수액 기준)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표Ⅶ-4〉 2012년 중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채권액	인수액	비고
케이알앤씨 (KR&C)	파산재단	24,617	186
	저축은행	1,289	95
			에이스, 제일2, 제일, 진흥, 토마토2, 토마토, 파랑새, 프라임, 한주, 경기저축은행

〈표Ⅶ-5〉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누계)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KR&C)	은 행	98,640	80,137	6개 은행(제일은행 포함)
	보 험	4,032	3,550	5개 생명보험
	금융투자	25,324	13,072	3개 금융투자사
	파산재단	85,655	3,472	460개 파산재단(5개 은행, 10개 보험, 4개 금융투자, 22개 증금, 80 ¹⁾ 개 저축은행, 339 ²⁾ 개 신탁)
	저축은행	25,637	5,127	30개 저축은행
	소 계	239,288	105,358	-
한아름증금 ³⁾	증 금	367,503	363,540 ⁴⁾	16개 증금
한아름금고 ³⁾	금 고	87,719	66,355 ⁴⁾	41개 저축은행
합 계		694,510	535,253	-

주 : 1) 미인수 저축은행 파산재단 12개 제외

2) 2010년 1월 1일 신탁 중앙회로 이관된 14개 파산재단 포함

3) 공적자금 지원 분류 상 예금대지급 기관

4) 예금대지급채권 포함

2.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의 효율적 관리

케이알앤씨(KR&C)는 부실금융기관의 계약 이전절차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을 신속하게 인수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단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현재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 자산의 잔액은 20조 3,025억원으로, 이 중 11조 3,167억원은 케이알앤씨(KR&C)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8조 9,858억원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자산의 자산가치 제고 및 적기 회수를 위해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인수·합병(M&A), 자산유동화에 의한 매각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제한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 등 케이알앤씨(KR&C)가 보유 중인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Ⅶ-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자산구분	직접관리	외부 위탁관리	합 계
대출채권	478	88,917	89,395
유가증권	7,944	-	7,944
부 동 산	730	941	1,671
구상채권	104,015	-	104,015
합 계	113,167	89,858	203,025



건전경영 풍토 조성

· 일시 : 2012. 10. 25(목)

· 주최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을 위한 저축은행 감사 워크숍

: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제8장

건전경영 풍토 조성 및 부실책임 추궁

- 제1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 제2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1. 저축은행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임직원 등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이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저축은행 건전성을 도모하고 저축은행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 교육을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업무 취급 시 준수해야 할 법령 및 규정과 최신 부실책임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 감사의 업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1년에 이어 2012년 10월에도 “상호저축은행 감사대상 건전경영풍토 조성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건전경영 풍토 조성 교육의 확대

공사는 업권별 금융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보금융기관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2년 4월 금융투자협회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기반시설을 통한 건전경영 풍토 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12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준법감시인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준법감시인 워크숍에 참가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 업무 및 부실책임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제2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효율성 제고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위법·부당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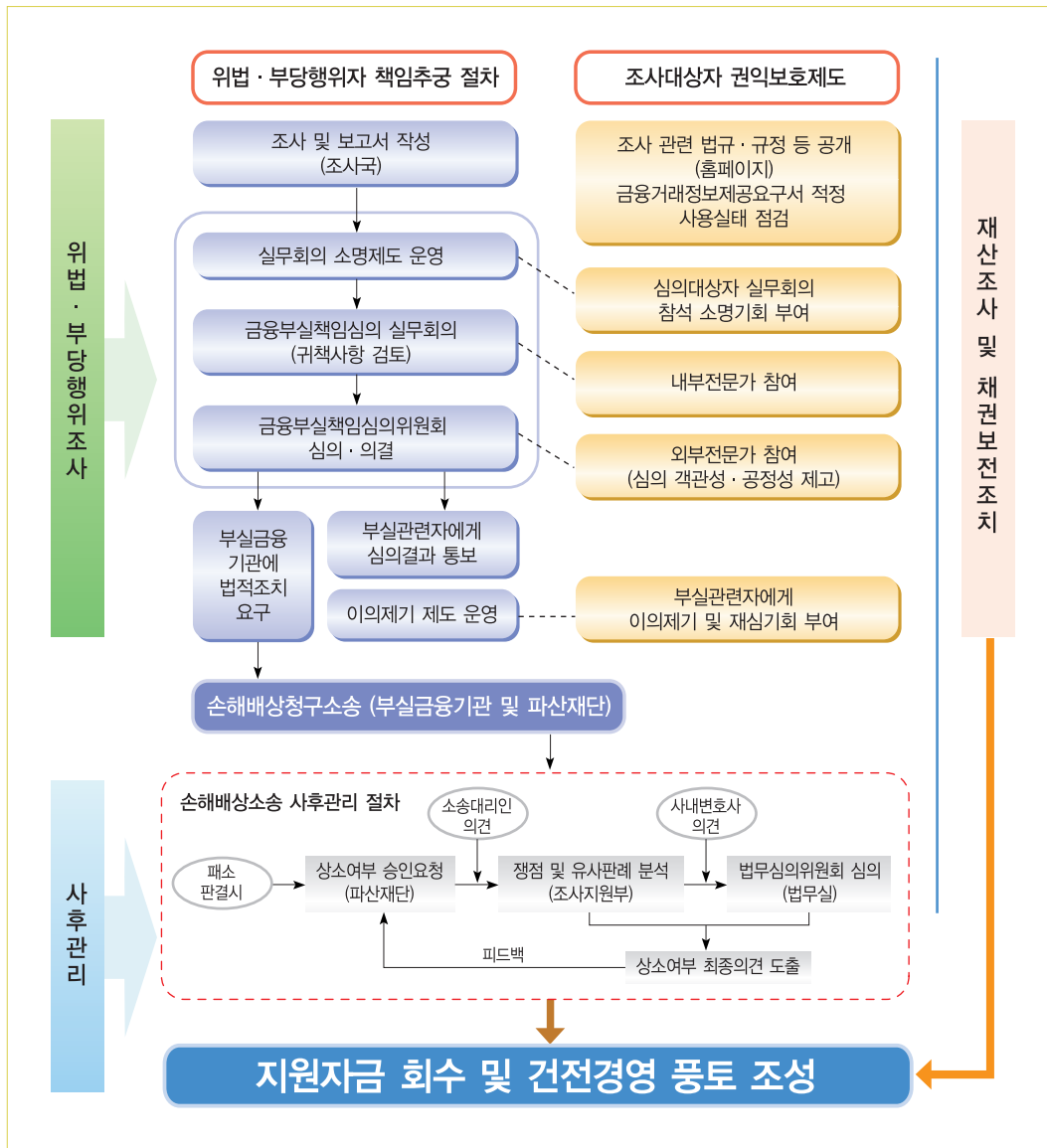
* 부실금융기관 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에 의한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

특히 공사는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이 밀착하여 불법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舊 조사부(부실금융기관 조사 담당)”와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부실채무기업 조사 담당)”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국 1부 1실로 조직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 수견 인력을 포함하여 2012년 말 현재 총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견 직원의 전문성 및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사자료 등을 제공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저축은행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우선 심의대상 선별기준 마련 등 업무 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 소명기간 확대 및 소명안내 강화 등 소명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는 등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부실책임심의 결과 2012년 말 현재 총 517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6,126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에 요구하였다.

〈그림 VIII-1〉 위법·부당행위자 책임추궁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표Ⅷ-1〉 부실금융기관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구 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기관 수	부실관련자 수	기관 수	부실관련자 수
은 행	15	191	-	-
금융투자	6	65	-	-
보 험	18	236	-	-
종합금융	22	160	-	-
저축은행	86	789	31	356
신 협	325	4,146	14	183
합 계	472	5,587	45	539

2.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2012년 말까지 부실관련자 9,013명에 대해 1조 8,1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이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강제집행 등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부실책임제재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Ⅷ-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2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 협 ¹⁾	합 계
부실금융기관수	15	6	18	22	85	311	457
피 고 수	191	83	276	181	1,026	7,256	9,013
부실책임 청구금액 ²⁾	1,004	342	2,435	3,047	5,434	5,856	18,118
부실책임 제재금액 ³⁾	471	218	1,346	548	4,056	3,208	9,847
부실책임 집행금액 ⁴⁾	102	54	218	660	922	769	2,725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2) 부실책임 청구금액 :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등을 감안하여 손배소 제기한 금액(소송청구액)

3) 부실책임 제재금액 : 부실책임청구금액 중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소송승소액)

4) 부실책임 집행금액 : 부실책임제재금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도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까지 28개 부실저축은행 부실관련자 425명에 대해 청구액 1,93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Ⅷ-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저축은행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2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저축은행수	피고수	부실책임 청구금액 ¹⁾	부실책임 제재금액	부실책임 집행금액
28	425	765	618	176

주 : 1) 소송 확정금액 기준(총 청구액 1,933억원, 소송진행 1,168억원)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의 법적조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사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 인력 중심의 “소송지원점검반”을 구성하여 논리적·체계적 변론 및 다양한 증거자료 제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산재단 손해배상소송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별 손해배상소송 전담변호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노력

공사의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2006년 말까지 마무리하였고, 예금보험기금이 지원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하여 2007년 상반기 예비조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2007년부터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2008년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전담 부서인 “舊 조사부”와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개편되었으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통해 부실채무기업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2년 말 현재 814명에 대하여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에 통보하였다.

〈표Ⅷ-4〉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현장조사 기업수	부실관련자 수
966	814

2. 부실채무기업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강화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187건, 9,80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표Ⅷ-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2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기업	피고수	부실책임 청구금액	부실책임 제재금액	부실책임 집행금액
148	1,180	9,800	4,492	1,178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법적조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소송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 소송 담당 실무자와 회의를 통해 소송 및 채권보전조치 관련 자문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 국내 재산조사 강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재산자료 제공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3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부실관련자 조사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명시함으로써 조사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23일에 실효(失効) 예정이었던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은 2014년 3월 23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실효성 있는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되어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된 부산 등 24개 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산조사 실시 결과 위법·부당 행위로 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친 대주주·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의 금융자산 883억원, 부동산 2,201필지를 발견하였고, 저축은행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친 부실채무자의 금융자산 21,609억원, 부동산 93,826 필지를 발견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재산조사를 통하여 발견한 부실관련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즉시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저축은행에서는 2012년 12월말 현재 (가)압류 16,863억원, 가처분 65건의 법적조치가 진행하였다.

〈표Ⅷ-6〉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필지, 건)

구 분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 현황		
	금융자산	부동산	(가)압류 ¹⁾		가처분
			금융자산	부동산	
부실책임자	883	2,201	726	758	28
부실채무자	21,609	93,826	8,669	6,710	37
합 계	22,492	96,027	9,395	7,468	65

주 : 1) 가압류결정문상 청구금액

2. 해외 재산조사 확대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 재산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해외 재산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캐나다·일본·호주·중국·뉴질랜드·필리핀 등 7개국을 조사대상국가로 선정하여 해외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한 위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2012년 말까지 국외도피 및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부실관련자 2,665명에 대해 해외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미화 521만달러를 회수하였다. 또한, 제5차 해외재산조사 결과 해외 재산 발견금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12년도에는 전년도(3명) 대비 6배 증가한 18명에 대하여 해외재산 회수를 위한 현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회수극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공사는 해외재산 발견 실적이 높은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에 대한 회수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해외은닉재산 회수 담당체계를 확립하고 실무진에게 업무매뉴얼, 회수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수 업무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2012년 들어 미국 10명, 뉴질랜드 1명 등 총 11명에 대하여 해외 발견재산 회수를 위한 현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표Ⅷ-7〉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천 USD)

년 도	2003~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금 액	3,044	-	2	349	1,400	415	5,210

3.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 실효성 제고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고 그에 관한 조사·회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채권회수의 극대화 및 금융부실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공사는 2012년 말까지 총 18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그 중 31건에 대해 296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총 14.8억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는 부실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파산재단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순회설명회, 신문 및 지하철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및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체납자은닉재산신고센터”와 공사인터넷 홈페이지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상호 연동하여 상시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무비용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공사발간물 및 금융연수원의 연수 안내책자에 광고를 게재하여 홍보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신고 접수건 중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등 사회적 물의자의 은닉재산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주요 일간지 인터뷰 기사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주요 일간신문(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각 1회 광고를 게재하고, 부산(1호선) 및 수도권(2호선, 7호선) 지하철에도 광고를 실시하는 등 국내 홍보를 강화하였다.

한편, 공사는 해외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국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한인회(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를 방문하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각 한인회마다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캐나다에 수신자 부담으로 “해외은닉재산 신고전용 전화”를 상시 운영하여 현지 교민이 요금 부담 없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미국(LA·뉴욕) 및 뉴질랜드(오클랜드) 한인회에 인터넷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미주 한인회(워싱턴,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및 LA총영사관을 방문하여 홍보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는 등 활발한 해외 홍보 활동을 하였다.

〈표Ⅷ-8〉 연도별 신고센터 접수건수, 회수건수 및 회수금액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접수건수	21	12	17	10	22	21	15	19	12	16	23	188
회수건수	-	1	1	2	3	8	4	2	4	2	4	31
회수금액	-	3,156	374	231	11,791	6,184	2,637	2,830	605	1,056	755	29,619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9장

기금 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이하 '상환대책' 이라 한다)에 따라 2003년 1월 1일,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였다. 동 기금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1. 안정적 조성

가. 특별기여금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2012년에 총 1조 1,855억원의 특별기여금을 수납하였다.

〈표IX-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요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¹⁾
법정한도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주 : 1) 2007년부터 신협의 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에서 5/10,000로 변경됨

〈표IX-2〉 금융권별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 원)

연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¹⁾	합계
			생보	손보				
2003	477,476,429,913	15,583,224,891	88,888,017,031	18,472,746,000	2,051,155,000	22,249,552,000	-	624,721,124,835
2004	495,600,167,905	16,808,361,665	97,815,297,519	19,780,120,619	562,468,000	26,428,683,000	-	656,995,098,708
2005	487,166,510,833	14,540,165,582	106,857,085,000	21,851,803,423	496,537,000	31,858,110,000	-	662,770,211,838
2006	498,681,846,988	15,144,470,993	116,019,390,370	24,194,140,937	636,385,000	36,957,658,017	21,636,276,543	713,270,168,848
2007	502,689,354,851	15,640,959,000	126,530,624,919	27,765,668,399	722,757,000	43,004,233,839	11,608,513,513	727,962,111,521
2008	497,628,429,865	18,450,538,082	136,365,120,000	31,887,977,512	794,110,000	49,122,536,517	12,910,122,846	747,158,834,822
2009	596,495,263,169	16,924,950,377	143,006,160,079	35,158,267,859	1,013,841,000	59,293,898,815	13,675,874,192	865,568,255,491
2010	681,137,103,049	21,309,273,266	153,430,348,000	40,861,760,000	1,899,113,000	71,512,241,512	16,962,417,699	987,112,256,526
2011	778,873,175,496	22,707,528,407	165,012,412,538	48,650,634,000	1,169,424,000	71,802,311,638	20,479,299,838	1,108,694,785,917
2012	851,819,585,691	22,575,972,492	175,951,332,846	59,246,731,571	968,148,000	52,111,753,417	22,797,105,416	1,185,470,629,433
합계	5,867,567,867,760	179,685,444,755	1,309,875,788,302	327,869,850,320	10,313,938,000	464,340,978,755	120,069,610,047	8,279,723,477,939

주 : 1)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총 52조 3,064억원의 출연금을 수령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2007년 이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수납하지 않고 있다.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87조 1,599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하였다.

2003년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2002년 말 예보채 잔액 80조 9,744억원이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그 이후 만기도래하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는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라 한다)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특별기여금 및 기타 회수 자금 등으로 2008년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표IX-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1998	21,015,044,000,000	-	21,015,044,000,000
1999	22,484,903,000,000	-	43,499,947,000,000
2000	8,940,700,000,000	-	52,440,647,000,000
2001	31,059,300,000,000	1,464,000,000,000	82,035,947,000,000
2002	3,660,000,000,000	4,721,500,000,000	80,974,447,000,000
2003	-	9,737,144,000,000	71,237,303,000,000
2004	-	16,622,737,500,000	54,614,565,500,000
2005	-	18,090,401,500,000	36,524,164,000,000
2006	-	19,063,614,000,000	17,460,550,000,000
2007	-	6,067,243,500,000	11,393,306,500,000
2008	-	11,393,306,500,000	-
합 계	87,159,947,000,000 ¹⁾	87,159,947,000,000	-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 원리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상환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2012년에 4조 7,700억원을 4년 및 5년 만기 고정금리채권으로 공모 방식을 통하여 발행하였다. 한편, 2012년 중 만기도래한 상환기금채 5조 6,90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2년 말 발행 잔액은 22조 8,200억원이다.

〈표IX-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04	6,500,000,000,000	-	6,500,000,000,000
2005	7,440,000,000,000	-	13,940,000,000,000
2006	2,870,500,000,000	315,500,000,000	16,495,000,000,000
2007	2,720,000,000,000	45,000,000,000	19,170,000,000,000
2008	8,800,000,000,000	10,000,000,000	27,960,000,000,000
2009	5,860,000,000,000	6,500,000,000,000	27,320,000,000,000
2010	6,810,000,000,000	7,440,000,000,000	26,690,000,000,000
2011	780,000,000,000	3,730,000,000,000	23,740,000,000,000
2012	4,770,000,000,000	5,690,000,000,000	22,820,000,000,000
합 계	46,550,500,000,000	23,730,500,000,000	22,820,000,000,000

마.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2년까지 재정융자 특별회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부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상환기금 설치로 기존 차입금 잔액은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적자금 상환 대책에 따라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전액은 2003년 1월 1일자로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한 신규 차입은 없고, 2012년에 세계은행(IBRD) 차관의 원금 1억불(1,168억원)을 상환하여 2012년 말 차입금 잔액은 1,168억원이다.

〈표IX-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차 입 금 액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기관	차 관 ¹⁾	재정융자 특별회계	소 계		
인수액	76,011	-	-	76,011	-	76,011
1998	3,295	2,416	10,582	16,293	9,337	82,967
1999	13,870	12,016	26,254	52,140	33,870	101,237
2000	90,028	13	39,533	129,574	9,802	221,009
2001	-	8	49,672	49,680	110,196	160,493
2002	-	-	59,553	59,553	3	220,043
2003	-	-	-	-	195,993	24,050
2004	-	-	-	-	11,168	12,882
2005	-	-	-	-	3,538	9,344
2006	-	-	-	-	1,168	8,176
2007	-	-	-	-	1,168	7,008
2008	-	-	-	-	1,168	5,840
2009	-	-	-	-	1,168	4,672
2010	-	-	-	-	1,168	3,504
2011	-	-	-	-	1,168	2,336
2012	-	-	-	-	1,168	1,168
합 계	183,204	14,453	185,594	383,251	382,083	1,168

주 : 1) IBRD, ADB 차관자금 등

2. 지 원

가. 개 관

공사는 상환기금을 통해 예금보험금의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2012년 총 96억원의 자금을 전액 출연 형태로 지원하였다.

〈표IX-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2년)

(단위 : 원)

금 용 권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합 계
은 행	-	9,576,185,980	-	-	-	9,576,185,980
금융투자	-	759,330	-	-	-	759,330
보 험	-	48,470,844	-	-	-	48,470,844
종합금융	-	-	-	-	-	0
저축은행	-	-	-	-	-	0
신 협	-	-	-	-	-	0
합 계	-	9,625,416,154	-	-	-	9,625,416,154

2012년 말까지 공적자금 형태로 상환기금에서 부보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총 110조 8,945억원이다. 이중 부보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 30조 3,124억원(27.3%),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50조 7,937억원(45.8%),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18조 6,117억원(16.8%),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1조 1,767억원(10.1%) 등이 지원 되었다.

〈표IX-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12년 12월 말 현재, 단위 : 원)

금 용 권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¹⁾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¹⁾	합 계
은 행	22,203,879,614,160	13,918,880,538,191	8,106,444,073,801	-	-	44,229,204,226,152
금융투자	9,976,873,000,000	414,332,785,796	2,123,943,660,527	-	11,270,816,793	12,526,420,263,116
보 험	15,919,758,000,000	3,119,211,303,513	349,481,101,882	-	-	19,388,450,405,395
종합금융	2,693,050,000,000	743,110,579,116	-	-	18,271,810,047,468	21,707,970,626,584
저축은행	100,000,000	416,147,029,007	-	596,860,000,000	7,289,213,136,680	8,302,320,165,687
신 협	-	-	-	-	4,740,151,481,096	4,740,151,481,096
합 계	50,793,660,614,160	18,611,682,235,623	10,579,868,836,210	596,860,000,000	30,312,445,482,037	110,894,517,168,030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포함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은행

SC은행은 과거 공사와 제일은행 인수자(뉴브리지 캐피탈)간 체결한 제일은행 주식매각계약서상에 규정된 사후손실보전 약정에 의거하여 소송·세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사후손실보전을 요청하였으며, 공사는 2012년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9,576백만원을 추가 출연하였다.

(2) 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은 과거 대한투자증권 인수 시 공사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부실 관련자 부동산의 경매비용에 대한 사후손실보전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2년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1백만원을 추가 출연하였다.

(3) 보험

미래에셋생명(舊SK생명)은 과거 국민·한덕생명 인수 시 공사와 체결한 추가출연약정서에 의거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원을 공사에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2년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48백만원을 추가 출연하였다.

(4) 저축은행

2012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저축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표IX-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저축은행 수	예금보험금 지급 금액
1998	17	14,705
1999	19	14,272
2000	11	6,500
2001	5	29,537
2002	10	7,719
2003	7	5
2004	8	26
2005	7	1
2006	8	3
2007	2	128
2008	-	△4
2009	1	-
2010	-	-
2011	-	-
2012	-	-
합 계	95	72,892

〈표IX-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2012년 12월 말 현재, 단위 : 억원)

기 관	출 자		출 연		대 출	
	2011년 이전	2012년	2011년 이전	2012년	2011년 이전	2012년
경기(舊코미트)	-	-	254	-	1,654	-
경북(舊한우리)	-	-	85	-	-	-
대전(現 대전)	-	-	-	-	102	-
도민(금강)	-	-	28	-	709	-
동원(한국투자)	-	-	63	-	783	-
부민(부산)	-	-	243	-	-	-
부산2	-	-	-	-	271	-
상업(舊현대)	-	-	701	-	-	-
새누리	-	-	13	-	21	-
솔로몬(舊골드)	-	-	663	-	-	-
신충북	-	-	-	-	161	-
아림	-	-	-	-	615	-
유니온	-	-	39	-	518	-
제이원	-	-	325	-	-	-
조일	-	-	29	-	738	-
충남(舊새은양)	-	-	-	-	45	-
충일	-	-	-	-	89	-
텔스(舊신한국)	-	-	775	-	-	-
하나로	-	-	422	-	-	-
한마음	-	-	521	-	-	-
해동(경기)	-	-	-	-	263	-
케이알앤씨(KR&C)	1 ¹⁾	-	-	-	-	-
합 계	1	-	4,161	-	5,969	-

주 : 1) 2001년 12월 말 정리금융공사(RFC)로 합병된 한아름금고에 대한 출자

3.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먼저 부보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보금융기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둘째, 예금대지급·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한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파산한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공사가 직접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부보금융기관에 대출한 자금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는 2012년에 1조 3,769억원을 회수하고, 2012년 말까지 총 50조 1,595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10〉 상환기금의 회수(2012년)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금 용 권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 행	111,539,642,569	128,952,077	737,977,429,744	-	31,361,998,053	881,008,022,443
금융투자	-	79,679,861	7,362,721,495	-	334,709,829	7,777,111,185
보 험	214,213,694,137	353,100,138	8,048,836,578	-	1,206,819,258	223,822,450,111
종합금융	3,325,129,381	-	-	-	218,567,498,932	221,892,628,313
저축은행	-	2,176,227	-	-	31,523,544,551	31,525,720,778
신 협	-	-	-	-	10,911,711,804	10,911,711,804
합 계	329,078,466,087	563,908,303	753,388,987,817	-	293,906,282,427	1,376,937,644,634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표IX-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금 용 권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 행	16,191,224,103,757	69,899,577,343	6,583,437,515,441	-	1,849,501,530,669	24,694,062,727,210
금융투자	1,212,144,785,109	323,124,716,519	1,797,921,926,521	-	7,800,810,225	3,340,992,238,374
보 험	3,630,002,518,132	88,750,917,579	240,566,938,460	-	431,028,239,213	4,390,348,613,384
종합금융	141,581,602,890	5,931,643,350	-	-	8,434,489,993,851	8,582,003,240,091
저축은행	-	34,129,258,277	-	596,860,000,000	5,102,352,317,709	5,733,341,575,986
신 협	-	401,687,311	-	-	3,418,372,118,209	3,418,773,805,520
합 계	21,174,953,009,888	522,237,800,379	8,621,926,380,422	596,860,000,000	19,243,545,009,876	50,159,522,200,565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나. 보유주식의 매각 등

(1) 은행

공사는 2012년 중 우리금융지주 배당금을 통해 1,148억원을 회수하였고, 제주은행 장중매각을 통해 1억원을 회수하였다. 이와 함께 (주)대우로부터 제일은행 관련 파산배당금을 수령하여 1억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공사는 우리금융지주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의결 후 매각절차를 재개하였으나,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8월 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절차를 중단하였다.

(2) 보험회사

공사는 2012년 중 한화생명 배당금을 통해 494억원,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을 통해 1,648억원을 각각 회수하였다.

(3) 기타

공사는 2012년 10월 케이알앤씨 보유 한국전력 주식 3.66%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여 6,087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공사는 2012년 2월 케이알앤씨 보유 SK하이닉스 주식 0.74%에 대하여 채권단 공동매각을 통해 1,022억원을 회수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케이알앤씨 보유 SG세계물산 0.07%를 장중매각하여 0.4억원을 회수하였다.

그 밖에, 공사는 공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공매*를 통해 6억원 추가 회수하였으며, 케이알앤씨 보유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을 통해 15억원을 회수하였다.

* 세일전자, 인켈, 경기개발공사 등 9개 종목

이처럼 공사는 2012년 중 케이알앤씨(KR&C, 舊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식을 블록세일, 채권단 공동매각, 장중매각, 공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총 7,130억원을 회수하였다.

다.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회수

케이알앤씨(KR&C)는 인수자산의 매각 및 처분을 위하여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M&A방식에 의한 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원 자금을 회수하여 2012년 말까지 총 40조 6,316억원을 회수하였다.

2012년 중 케이알앤씨(KR&C)는 주요 보유 유가증권의 공사 매각 위임, 대출채권의 원리금 추심, 국내외 소송 절차 진행, 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 및 구상채권 파산배당 등을 통해 9,887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12〉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자산구분 ¹⁾	대상 자산	회수액	회수 방법
2012년 회수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1,198	직접 추심 및 소송
		외화 채권	43	
		소 계	1,241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7,324 ²⁾	공개경쟁입찰, 장중매각, 배당
	부 동 산	업무용 빌딩 등	80	-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1,242	파산배당
	합 계		9,887	-
누 적	대출채권	원화 채권	105,831	국제입찰, NPL매각, ABS 발행 등
		외화 채권	30,703	
		소 계	136,534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56,942	공동매각, 블록세일 등
	부 동 산	업무용 빌딩 등	6,689	공매 및 수의계약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206,151	파산배당
	합 계		406,316	-

주 : 1) 공적자금 지원 분류 상 예금대지급 계정에 해당하는 한아름중금 및 한아름금고의 자산 중 예금대지급 채권이 아닌 대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매각액을 포함

2) 공사에 매각 위임된 케이알앤씨(KR&C) 보유 주요 유가증권의 2012년 매각 회수액(7,130억원) 포함

라. 파산배당

2012년 중 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을 통하여 은행·금융투자 및 보험 파산재단으로부터 329억원, 종합금융·저축은행 및 신협 파산재단으로부터 2,610억원 등 총 2,939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하여 2012년 말까지 총 19조 2,435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¹⁾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금 용 권	파산재단 수	회 수 액	
		2012년	1999년~2012년 총회수액
은 행	5	314	18,495
보 험	10	12	4,310
금융투자	4	3	78
종합금융	22	2,186	84,345
저축은행	75	315	51,024
신 협	325	109	34,183
합 계	441	2,939	192,435

주 : 1) 공사가 파산재단(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및 케이알앤씨(舊 한아름증권·금고를 통해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로부터 수령한 파산배당 회수금액

마. 대출금 회수 등

공사는 2012년 말까지 대출 형태로 총 5,9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였다. 또한, 2012년 말까지 출연금 정산 등을 통해 회수한 지원금은 총 5,222억원이며, 2012년 중 SC은행으로부터 1억원, 대투증권으로부터 1억원, 대한화재 등으로부터 4억원,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0.2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6억원을 회수하였다.



제2절 예금보험기금

1. 재원 조성의 다양화

가. 예금보험료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2년까지 수납한 예금보험료는 상환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한편, 2011년 3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업권별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 (다만,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와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 발행,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공사는 특별계정을 포함하여 2012년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조 1,004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하였다.

〈표Ⅸ-14〉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8/10,000	15/10,000 ¹⁾	15/10,000 ²⁾	15/10,000	40/10,000 ³⁾
법 정 한 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 주 : 1) 2007년부터 금융투자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예금보험료율 30% 인하
 2)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참작하여 표준비율의 5%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 인상 또는 인하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예금보험료율 변경(기준 35/10,000)

〈표Ⅸ-15〉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 계 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4,775	312	2,580	535	73	667	-	8,942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	9,509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	10,484
2007	5,027	256	3,654	801	22	1,306	-	11,066
2008	4,808	305	3,934	918	24	1,483	-	11,472
2009	5,291	276	4,097	1,016	29	1,737	-	12,446
2010	5,451	284	2,609	698	34	2,524	-	11,600
2011	4,795	283	2,362	700	18	2,331	1,742	12,231
2012	3,748	2	-14 ³⁾	100	8	1,344	5,816	11,004
합 계	48,711	2,657	28,525	6,664	259	14,275	7,558	108,649

-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설치
 3) 2012년 이전에 납부한 예금보험료에 대한 환급 발생
 4)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부보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년까지 수납한 출연금은 상환 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한 출연금은 현행 예금 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공사는 2012년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9억원의 출연금을 수납하였다.

〈표IX-16〉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단위 : 백만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 계 ³⁾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30	-	650	200	-	-	-	880
2004	340	200	600	200	-	-	-	1,340
2005	220	200	-	-	-	1,250	-	1,670
2006	380	800	-	200	-	1,340	-	2,720
2007	-	-	-	-	-	-	-	-
2008	160	11,005	-	-	-	556	-	11,721
2009	766	4,312	419	342	17	777	-	6,633
2010	80	584	900	30	-	-	-	1,594
2011	30	-	-	-	-	1,200	-	1,230
2012	575	130	5,000	800	-	2,400	-	8,905
합 계	2,581	17,231	7,569	1,772	17	7,523	-	36,693

주 : 1)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을 위한 특별계정은 출연금 수입 없음

3)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 및 제26조의2에 따라 2011년 12월 정부보증 없이 공사 자체 신용으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다. 2012년 이후에도 채권 발행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외부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2012년 8월 공사 자체 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중에 20조 4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였다.

〈표IX-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채권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11	12,000	-	12,000
2012	200,400	-	200,400
합 계	212,400	-	212,400

라.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과 2004년에 1,664억원을 차입하였고, 2007년에는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314억원을 차입하였다.

이중 신용협동조합계정의 외부 차입금은 파산배당 등 자체 회수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920억원을 상환한 후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잔액을 모두 이관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부 차입금이 없고, 저축은행계정의 외부차입금도 2008년 중 2,314억원 전액을 상환하였다.

한편, 2011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정리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은 은행 등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2012년 말까지 총 24조 6,131억원을 차입하였다. 특히, 2012년중 특별계정의 재원확충의 일환으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를 신청하여 무이자(10년 만기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012년 7월 정부차입금 1,000억원을 수령하였다.

2012년 말까지 특별계정 차입금 24조 7,131억원 중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23조 4,625억원을 상환하여 2012년 말 차입금 잔액은 1조 2,506억원이다.

〈표IX-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계정별	연 도	차 입 금 액 ¹⁾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 기관	한국은행 등	정 부	소 계		
저축 은행	2007	2,314	-	-	2,314	-	2,314
	2008	-	-	-	-	2,314	-
	소계	2,314	-	-	2,314	2,314	-
특별 계정	2011	104,199	-	-	104,199	12,000	92,199
	2012	141,932	-	1,000	142,932	222,625	12,506
	소계	246,131	-	1,000	247,131	234,625	12,506
합 계		248,445	-	1,000	249,445	236,939	12,506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2. 적시 지원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에 지출한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저축은행 등 16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저축은행계정을 통하여 총 4조 5,2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24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특별계정을 통하여 총 24조 8,951억원을 지원하였다.

〈표IX-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2년)

(단위 : 억원)

계 정 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²⁾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특별계정 ¹⁾	1,411	150,120	-29,390	533	357	123,031

주 : 1) 특별계정 외에 타 계정은 2012년 중 신규 자금 지원 없음

2) 2011년중 지급한 가지급금을 2012년 계약이전시 일부 회수함에 따라 부(負)의 자금지원 발생

〈표IX-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12년 12월 말 현재, 단위 : 억원)

계 정 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	-	-	-	-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2,383	208,633	36,060	1,100	775	248,951
합 계	3,594	233,175	50,472	5,991	994	294,226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저축은행(특별계정) 지원내역

공사는 2011년부터 영업 정지된 24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통하여 가자금금을 포함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전이 확정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순자산부족분을 출연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자산은 케이알앤씨(KR&C)로 계약이전하여 이에 따른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2012년 말까지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IX-21〉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예금보험금 지급 (가자금금 포함)	출연, 출자 등	합 계
삼화 등 16개 저축은행	2011년 중	32,710	127,034	159,744
솔로몬	2012. 5. 6	1,680	32,934	34,614
미 래	2012. 5. 6	604	11,638	12,242
한 국	2012. 5. 6	653	10,914	11,567
한 주	2012. 5. 6	200	1,678	1,878
토마토2	2012.10.19	1	5,094	5,095
진 흥	2012.11.16	165	10,178	10,343
경 기	2012.12.28	7	9,847	9,854
더블유	2012.12.28	40	3,574	3,614
합 계		36,060	212,891	248,951



3.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지원한 자금도 상환기금의 회수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부보금융기관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회수,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따른 파산배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자금 상환 등의 회수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에 저축은행계정은 1,044억원, 특별계정은 1,150억원을 회수하였고, 2003년부터 2012년 말까지 누적으로 총 1조 6,131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22〉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2년 및 누계)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보험금회수	대출금회수	개산지급금 회수	합 계 ¹⁾
2012년	저축은행	6	245	345	395	53	1,044
	특별계정	11	-	317	702	120	1,150
	합 계	17	245	662	1,097	173	2,194
2003~2012년 말 누계		2,546	1,031	7,151	5,192	211	16,131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2년 중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1,044억원의 파산배당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누계실적으로 총 7,533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공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케이알앤씨(KR&C) 등을 통해 경북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5,991억원을 대출하여 총 5,192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23〉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용 권	파산배당금 등 회수 ¹⁾		대출금 회수 ¹⁾	
	2012년 중	2003~2012년말 누 계	2012년 중	2003~2012년말 누 계
저축은행(특별계정 포함)	1,044	7,533	1,097	5,192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기금 건전성 제고

2003년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한 이후 2006년 5월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목표 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사는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2007년 10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하여 2009년부터 목표 기금제를 시행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2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생명보험계정과 손해보험계정을 분리하고 부보 금융기관의 수가 적은 중금계정은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예금 보험료를 인하,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저축 은행의 정리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6개 계정 외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 계정”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일부 및 회수자금 등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달하여 2011년 이후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발간하고, 특별계정의 2011년도 결산결과 및 2012년도 운용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2012년 7월에는 특별계정의 재원확충 및 조성재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정부(공공 자금관리기금)로부터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금을 수령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공사는 특별계정을 통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을 2011년 12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채권 발행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2년 8월 공사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은행채의 신규 편입을 통해 운용자산을 다각화하고, 2011년 2월에는 대규모 채권매도를 통해 매도차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수익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운용체계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연 중 정확한 수지 예측 및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적정 유동성 관리를 통해 원리금 상환 등 기금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면서도, 보유 현금성자금의 최소화 노력 및 은행 투자한도 설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2년 1월 세부 자산별 시장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예치금의 Market VaR를 도입하는 한편 2012년 6월 위기상황 판단지표의 모니터링 체계를 신규로 구축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저축은행 및 특별계정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통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ANNUAL REPORT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PLAN

제10장

2012년도 결산

제1절 결산 개요

제2절 결산 기준

제3절 결산 현황



결산 개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계리)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공사회계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등 3개의 회계단위로 구분계리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기금과 공사회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한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 등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으며, 상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다.

공사는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에는 삼덕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은 ‘적정’ 이었다.



결산 기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의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고, 상환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1.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가증권 중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유가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

유가증권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공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 처리하며 그 변동이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중대한 오류 및 회계변경에 의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기손익이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또는 감소)로, 당기손익과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또는 감소)로 처리하고 있다.

나. 대출금 등의 평가

대출금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지급준비금

보험사고 발생 및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기타충당부채(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라.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자금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비유동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을 감소시키고 경상운영비의 과목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경상운영비의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다. 예금보험료수입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예금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수익 · 비용의 기간귀속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손익을 계상하였다.

- (1) (비용의 이연) 당해 연도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고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였다.
- (2) (비용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여 비용에 가산하였고, 결산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

- (3) (수익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계약 또는 약관에 정한 기일이 미도래하여 결산일 현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수익으로 표시하여 수익에 가산하였다.

II. 상환기금

1.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상환기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

채무증권은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나. 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 미수채권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시 발생한 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다.

마. 장기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바. 사채발행차금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사채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 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사.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상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동 과목을 감소시키고 관리 운영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은 프로그램총원가로 그 이외의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

3.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비용인식기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결산 현황

1.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 통합)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구분회계단위인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간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통합결산서를 작성한다.

구분회계단위별 재무 현황 및 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보험기금

(1) 재무 현황

2012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15조 1,905억원으로 2011년말 대비 3조 380억원(25.0%)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2012년 중 발생한 부실저축은행 정리자금 지원으로 인해 구상채권이 7조 935억원 증가, 기말보유자금 확보 등으로 투자자산이 5,239억원 증가한 반면, 전년도말 계상된 보험금가지급금이 4조 9,172억원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구상채권자산(27조 472억원)은 2012년 중 부실화된 저축은행 관련 예금보험금 및 출연금 지급 등으로 총 16조 3,395억원 증가하였고, 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증가액(9조 2,460억원)을 차감하면 순증가액은 7조 935억원이다. 투자자산(1조 9,013억원)은 기말 보유 자금 확보 및

가고 저축은행 신설에 따라 5,239억원 증가하였다.

부채총액은 2012년 말 현재 22조 7,232억원으로 2011년말 대비 6조 3,621억원(38.8%)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의 정리 관련 손실 추정치인 지급준비금이 환입(5조 7,902억원) 되어 부채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특별계정 자금 부족으로 예보채 발행(20조 614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총액은 2012년 말 현재 (-)7조 5,327억원으로 2011년말 대비 3조 3,241억원(79.0%)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당기순손실(3조 3,325억원)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손익 현황

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3조 3,32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조 6,316억원 개선되었다.

사업손익은 7,182억원으로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사업수익(1조 4,260억원)의 경우 예금보험료수익(1조 1,212억원), 운용자산 이자수익(2,160억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비용(7,078억원)의 경우 차입금이자(1,604억원), 사채이자(4,581억원), 경상운영비(81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업외손익은 (-)4조 507억원으로 주로 예금보험금, 출연금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순전입액(9조 8,110억원)과 기타충당부채 순환입액(5조 7,90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충당부채 순환입액(5조 7,902억원)은 2011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 현재 계약이전 및 예금보험금 지급 미완료 상태인 7개 저축은행(토마토,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에이스, 부산)에 대한 손실예상액을 2012년 중 환입한 것이다.

나. 공사회계

(1) 재무 현황

2012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193억원으로 2011년말 대비 18억원(8.5%) 감소하였다. 유동자산은 22억원으로, 공사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2012년)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회계기준이 변경되어 2011년말 대비 37억원 감소하였다. 비유동자산은 171억원으로, 직원합숙소 추가 임차 등으로 인하여 2011년말 대비 19억원 증가하였다.

부채총액은 2012년 말 현재 약 208억원으로 2011년말 대비 2억원(0.8%) 감소하였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추정비용을 부채로 인식한 사유 등으로 유동부채가 22억원 증가한 반면, 퇴직연금운용자산 예치(퇴직급여충당금 차감형식 표시) 등으로 비유동부채가 24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총액은 2012년 말 현재 약 (-)15억원으로 2011년말 대비 16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부채 인식에 주로 기인하였다.

(2) 손익 현황

2012년 중 당기순이익은 3억원으로 총수익(921억원)과 총비용(918억원)의 차액만큼 발생하였다.

총수익은 921억원으로 예치금이자 등 금융수익 5억원(0.5%)과 기금전입수익 등 기타의 사업 수익 916억원(99.5%)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비용은 918억원으로 인건비 550억원(59%)과 경비 368억원(4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환기금

가. 재무 현황

자산총액은 2012년 말 현재 11조 3,432억원으로 2011년 말 대비 7,715억원(7.3%)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자산(8조 2,451억원)이 우리금융지주 등 주식 평가액의 증가(1조 1,657억원)에도 불구하고 KR&C 대출금의 회수(7,256억원) 및 유동성대체(8,786억원) 등으로 5,387억원 감소한 반면, 유동자산(3조 750억원)이 KR&C 대출금의 유동성 대체 및 기말 보유자금 확보 등으로 1조 3,978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채총액은 2012년 말 현재 23조 1,507억원으로 2011년말 대비 9,636억원(4.0%) 감소하였다. 이는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자금(7,256억원) 등으로 기존 부채를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순자산총액은 2012년 말 현재 (-)11조 8,075억원으로 2011년말 대비 1조 7,351억원 (12.8%)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 5,709억원의 시현과 지분증권의 주가상승 등으로 순자산조정이 1조 1,641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나. 손익현황

2012년 중 재정운영결과는 (-)5,709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이익이 4,915억원(618.4%) 증가하였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負(-)인 경우 발생한 원가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중 순이익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2011년도 대비 대손충당금전입액 감소(5,215억원) 및 배당금수익 증가(1,628억원) 및 이자 수익 감소(2,770억원)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4,052억원 감소하고 특별기여금수입인 비교환수익이 983억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상환기금의 고유사업인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6,641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1조 3,908억원에서 프로그램차감수익 7,267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6,361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6,641억원에서 관리운영비 107억원 및 비배분비용 161억원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 549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원가로 배부되지 않은 인건비, 경비 등의 관리업무비를 말하며, 비배분수익 및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한편, 재정운영결과 (-)5,709억원은 재정운영순원가 6,361억원에서 비교환수익 1조 2,070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특별기여금수입을 말한다.

〈표X-1〉 요약 재무상태표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 당 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48,881	94,722	유동부채	13,650	151,621
1. 당좌자산	48,881	94,722	1. 단기차입금	11,506	92,199
현금 및 현금성자산	2,850	2,149	2. 미지급금	-	-
단기금융상품	25,831	17,162	3. 예수금	43	26
유동성매도가능증권	14,007	19,944	4. 선수금	-	6
단기대여금	1,336	1,786	5. 미지급비용	2,101	1,488
(대손충당금)	(-)669	(-)805	6. 기타충당부채	-	57,902
미수수익	5,556	5,348	비유동부채	213,699	12,120
(대손충당금)	(-)30	(-)36	1. 장기차입금	1,000	-
선급금	-	49,174	2. 사채	212,400	12,000
선급비용	1	-	사채할증발행차금	317	11
비유동자산	103,125	26,933	(사채할인발행차금)	(-)92	-
1. 투자자산	19,094	13,822	3. 퇴직급여충당부채	123	127
매도가능증권	16,844	12,667	(국민연금전환금)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169	1,067	(퇴직연금운용자산)	(-)122	-
장기대여금	0	40	(퇴직보험예치금)	-	(-)92
기타투자자산	12	6	4. 기타비유동부채	74	74
회원권	18	14	부채총계	227,349	163,741
건물	6	6	이익잉여금	(-)75,464	(-)42,124
(감가상각누계액)	(-)5	(-)5	당 기: (-) 33,323		
기타유형자산	187	170	전 기: (-)109,642		
(감가상각누계액)	(-)161	(-)14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2	38
2. 기타의비유동자산	84,057	13,111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5	337
구상채권	270,472	107,077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78	(-)299
(대손충당금)	(-)186,530	(-)94,070	3. 지분법자본변동	(-)5	-
보증금	115	104	자본총계	(-)75,342	(-)42,086
기타비유동자산	-	-	부채및자본총계	152,007	121,655
자산총계	152,007	121,655			

〈표 X-2〉 요약 손익계산서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 당 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사업비용 (나)	7,204	2,730	사업수익 (가)	14,388	14,401
1. 사업직접원가	6,285	1,852	1. 금융수익	2,165	1,968
경상운영비	21	-	예금이자	1,018	688
차입금이자	1,604	1,817	유가증권이자수익	1,080	1,171
사채이자	4,581	28	대여이자	67	69
기금직접원가	79	7	유가증권처분이익	-	40
2. 인건비	550	500	2. 기타의 사업수익	12,223	12,433
3. 경비	369	378	보험료수익	11,212	11,381
			출연금수익	89	12
			기금전입수익	121	128
			기타사업수익	801	912
사업손익 (다=가-나)	7,184	11,671	사업외수익 (라)	64,196	60,730
사업외비용 (마)	104,703	182,043	1. 대손충당금환입	6,288	1,540
1. 기타의대손상각비	104,399	64,800	2. 기타충당부채환입액	57,902	59,182
2.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117,084	3. 지분법이익	-	8
3. 지분법손실	304	159	4. 기타영업외수익	6	-
4. 기타영업외비용	-	-			
당기순이익 (다+라-마)	(-)33,323	(-)109,642			

〈표 X-3〉 요약 재무상태표 (예금보험기금)

• 당 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48,859	94,664	유동부채	13,607	151,600
1. 당좌자산	48,859	94,664	1. 단기차입금	11,506	92,199
현금 및 현금성자산	2,828	2,129	2. 미지급금	-	-
단기금융상품	25,831	17,126	3. 예수금	31	15
유동성매도가능증권	14,007	19,944	4. 선수금	-	6
단기대여금	1,336	1,786	5. 미지급비용	2,070	1,478
(대손충당금)	(-)669	(-)805	6. 기타충당부채	-	57,902
미수수익	5,556	5,348	비유동부채	213,625	12,011
(대손충당금)	(-)30	(-)36	1. 사채	212,400	12,000
선급금	-	49,172	할증발행차금	317	11
			(할인발행차금)	(-)92	-
비유동자산	103,046	26,861	2. 장기차입금	1,000	-
1. 투자자산	19,013	13,774	부채총계	227,232	163,611
매도가능증권	16,843	12,667	이익잉여금	(-)75,449	(-)42,12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169	1,067	당 기: (-)33,325		
장기대여금	-	40	전 기: (-)109,641		
2. 기타의비유동자산	84,033	13,08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2	38
구상채권	270,472	107,077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5	337
(대손충당금)	(-)186,529	(-)94,070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78	(-)299
기타비유동자산	91	80	3. 지분법자본변동	(-)5	-
자산총계	151,905	121,525	자본총계	(-)75,327	(-)42,086
			부채및자본총계	151,905	121,525

〈표 X-4〉 요약 손익계산서 (예금보험기금)

- 당 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사업비용 (나)	7,078	2,598	사업수익 (가)	14,260	14,267
1. 사업직접원가	7,078	2,598	1. 금융수익	2,160	1,963
경상운영비	815	746	예금이자	1,013	683
차입금이자	1,604	1,817	유가증권이자수익	1,080	1,171
사채이자	4,581	28	대여이자	66	69
기금직접원가	78	7	유가증권처분이익	-	40
			2. 기타의 사업수익	12,100	12,304
			보험료수익	11,212	11,381
			출연금수익	89	12
사업손익 (다=가-나)	7,182	11,669	기타사업수익	799	911
사업외비용 (마)	104,703	182,043	사업외수익 (라)	64,196	60,733
1. 기타의대손상각비	104,399	64,800	1. 대손충당금환입	6,289	1,540
2.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117,084	2. 기타충당부채환입액	57,902	59,182
3. 지분법손실	304	159	3. 지분법이익	-	8
4. 기타영업외비용	-	-	4. 기타영업외수익	5	3
당기순이익 (다+라-마)	(-)33,325	(-)109,641			

〈표X-5〉 요약 재무상태표 (공사회계)

• 당 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공사회계)

(단위 : 백만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2,242	5,913	유동부채	4,257	2,012
1. 당좌자산	2,242	5,913	1. 예수금	1,216	1,087
현금및현금성자산	2,179	2,013	2. 미지급비용	3,041	925
단기금융상품	-	3,621			
미수수익	3	6			
선급금	-	216			
미수금	9	9			
선급비용	51	48			
비유동자산	17,055	15,159	비유동부채	16,515	18,933
1. 투자자산	5,586	4,710	1. 퇴직급여충당부채	12,302	12,703
기타투자자산	1,160	555	(국민연금전환금)	(-)2	(-)2
회원권	1,813	1,421	(퇴직보험예치금)	-	(-)9,143
			(퇴직연금운용자산)	(-)12,300	-
건물	591	591	2. 기타비유동부채	16,515	15,375
(감가상각누계액)	(-)520	(-)488	부채총계	20,772	20,945
기타유형자산	18,689	16,988	1. 이익잉여금	(-)1,475	127
(감가상각누계액)	(-)16,147	(-)14,357	(당기잉여금 또는 결손금)		
			당 기: 293		
2. 기타의비유동자산	11,469	10,449	전 기: (-)3		
보증금	11,469	10,449	자본총계	(-)1,475	127
자산총계	19,297	21,072	부채및자본총계	19,297	21,072

〈표X-6〉 요약 손익계산서 (공사회계)

- 당 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사회계)

(단위 : 백만원)

비 용	금 액		비 용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사업비용 (나)	91,852	85,731	사업수익 (가)	92,145	85,728
1. 사업직접원가	-	-	1. 금융수익	522	524
기타사업비	-	-	예금이자	522	524
2. 인건비	54,983	50,023	2. 기타의 사업수익	91,623	85,204
3. 경비	36,869	35,708	기금전입수익	91,466	85,024
사업손익 (다=가-나)	293	(-)3	기타사업수익	157	180
사업외비용 (마)	-	-	사업외수익 (라)	-	-
당기순이익 (다+라-마)	293	(-)3			

〈표 X-7〉 요약 재정상태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당 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순자산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30,750	16,772	유동부채	78,598	59,501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813	4,789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76,713	57,982
2. 단기금융상품	19,604	10,457	2. 기타유동부채	1,885	1,519
3. 단기투자증권	1,397	1,398			
4. 미수채권	15,561	13,776	장기차입부채	152,909	181,450
(대손충당금)	(-)15,470	(-)13,721	1. 공채	152,909	180,296
5. 단기대여금	145,165	73	2. 장기차입금	-	1,154
(대손충당금)	(-)136,320	-			
6. 기타유동자산	-	-	장기총당부채	-	131
투자자산	82,451	87,838	1. 기타장기총당부채	-	131
1. 장기대여금	1,290	153,710			
(대손충당금)	(-)986	(-)136,026	기타비유동부채	-	61
2. 장기투자증권	82,147	70,154	1. 기타비유동부채	-	61
3. 기타투자자산	-	-			
기타비유동자산	231	1,107	부채총계	231,507	241,143
1. 장기미수채권	93	103			
(대손충당금)	(-)92	(-)101	순자산		
2. 기타의비유동자산	230	1,105	1. 기본순자산	523,064	523,064
			2. 적립금및잉여금	(-)663,647	(-)669,357
			3. 순자산조정	22,508	10,867
자산총계	113,432	105,717	순자산계	(-)118,075	(-)135,426
			부채와순자산계	113,432	105,717

〈표 X-8〉 요약 재정운영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당 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총원가	수 익	순원가	총원가	수 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13,908	7,267	6,641	20,114	9,421	10,693
1. 금융정책지원	13,908	7,267	6,641	20,114	9,421	10,693
보험비용	-	-	-	9	-	-
인건비	-	-	-	-	-	-
경비	2	-	-	1	-	-
지급수수료	52	-	-	67	-	-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3	-	-	-	-	-
대손상각비	2,230	-	-	7,445	-	-
공채이자비용	11,618	-	-	12,592	-	-
차입금이자비용	3	-	-	-	-	-
투자증권감액손실	-	-	-	-	-	-
기타이자수익	-	3	-	-	-	-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	-	-	-	1,532	-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	21	-	-	16	-
충당부채환입	-	35	-	-	-	-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	436	-	-	779	-
잡이익	-	2	-	-	4	-
대손충당금환입	-	903	-	-	81	-
배당금수익	-	3,294	-	-	1,666	-
정부외용자금이자수익	-	2,573	-	-	5,343	-
II. 관리운영비	-	-	107	-	-	106
1. 인건비	-	-	-	-	-	-
2. 경비	-	-	107	-	-	106
III. 비배분비용	-	-	161	-	-	48
1. 지급수수료	-	-	1	-	-	-
2. 대손상각비	-	-	-	-	-	-
3. 평가손실	-	-	82	-	-	29
4. 기타비용	-	-	78	-	-	19
IV. 비배분수익	-	-	549	-	-	555
1. 이자수익	-	-	440	-	-	410
2. 평가이익	-	-	82	-	-	29
3. 기타수익	-	-	27	-	-	116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	-	6,361	-	-	10,292
VI. 비교환수익	-	-	12,070	-	-	11,087
1. 부담금수익	-	-	12,070	-	-	11,087
VII. 재정운영결과(V-VI)	-	-	(-5,709)	-	-	(-795)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대외평가
3. 2012년도 주요일지
4. 통계

1. 예금보험제도 개요

가. 예금보험제도 의의

예금보험제도는 평상시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나. 부보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이에 해당된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국내지점을 포함하여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모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포함된다.

다. 부보예금

부보예금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그 보호범위가 정해져 있다. 1997년 말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되었던 일부 금융상품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예금이 2001년 1월 1일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부보예금 및 비부보예금 현황 〉

(2012년 12월말 현재)

구 분	부보예금	비부보예금
은 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증권사 등)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 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합금융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라. 보호한도

1996년 예금보험공사 출범당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만원이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1997년 12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호한도가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한편, 원리금 전액 보장으로 인한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1998년 7월에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호한도가 다시 축소 조정되었다. 조정된 내용은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원금만 보호하는 것이었다.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공사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금융시장이 더욱 안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예금부분 보호제도로 전환하게 되었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사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

구 분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19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	1998년 8월 1일 이후 가입		
		원금 2,000만원 이하 (또는 납입보험료 2,000만원 이하)	원금 2,000만원 초과 (또는 납입보험료 2,000만원 초과)	
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원금과 약정이자 전액보호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	원금만 보호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
보 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전액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액과 납입보험료와 소정의 이자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2,000만원 한도에서 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액과 납입보험료 중 적은 금액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 만원까지 보호
		예금보험사고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고보험금은 전액보호		

2. 대외평가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사는 201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결산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 포함) 및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기관평가단 및 기관장평가단으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았다.

2012년 6월에 발표된 2011년도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전년대비 한 등급씩 상승한 'A등급' 수준을 달성하였다.

나. 기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는 사업운용과 자산운용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2월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동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실사 및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2012년 5월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 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 최우수 등급인 "탁월"(43개 기금 중 6개에 부여)을 획득하여 최고 수준의 기금운용 역량을 인정받았다.

3. 2012년도 주요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월 5일	SG세계물산 지분 0.07%, 장종매각을 통해 0.4억원 회수
2월 20일	SK하이닉스 지분 0.74%, 채권단 공동매각을 통해 1,022억원 회수
4월 18일	우리금융지주 배당금으로 1,148억원 회수
5월 6일	솔로몬 · 한국 · 미래 · 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7월 4일	한화생명보험 배당금으로 494억원 회수
7월 24일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으로 1,648억원 회수
9월 5일	솔로몬 · 한국 · 한주저축은행 계약이전
9월 27일	경기개발공사 등 5개 종목 공매를 통해 1억원 회수
10월 5일	미래저축은행 계약이전
10월 10일	한국전력 지분 3.66%, 블록세일을 통해 6,087억원 회수
10월 19일	토마토2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10월 25일	IADI, '올해의 예금보험기구 상' 수상
11월 16일	진흥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12월 21일	세일전자 등 4개 종목 공매를 통해 5억원 회수
12월 28일	경기 · 더블유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1월 2일 ~ 12월 28일	제주은행 보통주 장종매각으로 1억원 회수

4. 통 계

가. 부보금융기관¹⁾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금 용 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은 행	53	53	55	54	54	55	56
(국 내)	(17)	(17)	(17)	(17)	(17)	(17)	(17)
(외국계)	(36)	(36)	(38)	(37)	(37)	(38)	(39)
금융투자 ²⁾	53	53	60	115	118	117	115
보 험	43	44	43	43	44	44	46
(생명보험)	(22)	(22)	(22)	(22)	(23)	(23)	(24)
(손해보험)	(21)	(22)	(21)	(21)	(21)	(21)	(22)
종합금융	2	2	2	2	1	1	1
저축은행 ³⁾	110	109	106	106	105	107	101
합 계	261	261	266	320	322	324	319

주 : 1) 부보금융기관은 영업개시일부터 인 · 허가 취소일 또는 해 · 파산일까지 금융기관을 말함

2) 「자본시장법」('09.2월 시행)상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09.2월 이전에는 증권사만 해당)

3) 저축은행중앙회('07.12월 부보금융기관에 포함) 제외

나. 금융권별 부보예금¹⁾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십억원)

금 용 권	2011 (B)	2012 (A)	증 감 (A-B)
은 행	850,117	891,813	41,696
금융투자	20,476	20,102	△374
보 험	357,921	449,877	91,956
(생명보험)	(289,364)	(364,836)	(75,472)
(손해보험)	(68,557)	(85,041)	(16,484)
종합금융	1,047	884	△163
저축은행	51,499	42,620	△8,879
합 계	1,281,060	1,405,296	124,236

주 : 1)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기관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부보금융기관 등의 예금을 제외한 금액(잔액기준)

다. 상환기금 수입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원)

구 분	상환기금 설치 전 예금보험료 수입(억원) ²⁾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원)					
	1998 이전 ¹⁾	1999	2000	2001	2002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은 행	1,613	1,975	2,630	4,139	4,361	14,718	502,689,354,851	497,628,429,865	596,495,263,169	681,137,103,049	778,873,175,496	851,819,585,691
금융투자	-	51	156	218	262	687	15,640,959,000	18,450,538,082	16,924,950,377	21,309,273,266	22,707,528,407	22,575,972,492
보 험	2,322	1,260	1,781	2,416	2,780	10,559	154,296,293,318	168,253,097,512	178,164,427,938	194,292,108,000	213,663,046,538	235,198,064,417
(생명보험)	(1,800)	(1,011)	(1,402)	(1,938)	(2,295)	(8,446)	(126,530,624,919)	(136,365,120,000)	(143,006,160,079)	(153,430,348,000)	(165,012,412,538)	(175,951,332,846)
(손해보험)	(522)	(249)	(379)	(478)	(485)	(2,113)	(27,765,668,399)	(31,887,977,512)	(35,158,267,859)	(40,861,760,000)	(48,650,634,000)	(59,246,731,571)
종합금융	980	336	233	139	130	1,818	722,757,000	794,110,000	1,013,841,000	1,899,113,000	1,169,424,000	968,148,000
저축은행	2,407	377	323	529	604	4,240	43,004,233,839	49,122,536,517	59,293,898,815	71,512,241,512	71,802,311,638	52,111,753,417
신 협	402	162	281	407	641	1,893	11,608,513,513	12,910,122,846	13,675,874,192	16,962,417,699	20,479,239,838	22,797,105,416
합 계	7,724	4,161	5,404	7,848	8,778	33,915	727,962,111,521	747,158,834,822	865,568,255,491	987,112,256,526	1,108,694,785,917	1,185,470,629,433

주 : 1) '98년 예금보험료 수입은 '98년초 예금보험기금 통합에 따라 해체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98년 4월 1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을 포함

2) '0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라. 예금보험료 수입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2003 ¹⁾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은 행	4,775	4,960	4,869	4,987	5,027	4,808	5,291	5,451	4,795	3,748	48,711
금융투자	312	336	300	303	256	305	276	284	283	2	2,657
보 험	3,115	3,403	3,737	4,059	4,455	4,852	5,113	3,307	3,062	86	35,189
(생명보험)	(2,580)	(2,832)	(3,109)	(3,362)	(3,654)	(3,934)	(4,097)	(2,609)	(2,362)	(-14)	(28,525)
(손해보험)	(535)	(571)	(628)	(697)	(801)	(918)	(1,016)	(698)	(700)	(100)	(6,664)
종합금융	73	17	15	19	22	24	29	34	18	8	259
저축은행	667	793	974	1,116	1,306	1,483	1,737	2,524	2,331	1,344	14,275
특별계정 ²⁾	-	-	-	-	-	-	-	-	1,742	5,816	7,558
합 계 ³⁾	8,942	9,509	9,895	10,484	11,066	11,472	12,446	11,600	12,231	11,004	108,649

주 : 1) '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11년 4월 설치

3) '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실적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77,617	36,600	453,765
금융투자	160	3	-	32,185	-	32,348
보 험	11,534	42,100	10,000	92,089	-	155,723
(생명보험)	(11,534)	(41,422)	-	(24,120)	-	(77,076)
(손해보험)	-	(678)	(10,000)	(67,969)	-	(78,647)
종합금융	65,120	-	12,600	73,344	-	151,064
저축은행	9,917	15,977	6,500	33,331	-	65,725
신 협	2,769	8,178	-	2,027	-	12,974
합 계	210,150	224,849	89,407	310,593	36,600	871,599 ¹⁾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바. 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¹⁾	자산매입 ¹⁾	대 출	합 계
은 행	22,203,879,614,160	13,918,880,538,191	-	8,106,444,073,801	-	44,229,204,226,152
금융투자	9,976,873,000,000	414,332,785,796	11,270,816,793	2,123,943,660,527	-	12,526,420,263,116
보 험	15,919,758,000,000	3,119,211,303,513	-	349,481,101,882	-	19,388,450,405,395
(생명보험)	(5,669,658,000,000)	(2,751,890,303,513)	-	(349,481,101,882)	-	(8,771,029,405,395)
(손해보험)	(10,250,100,000,000)	(367,321,000,000)	-	-	-	(10,617,421,000,000)
종합금융	2,693,050,000,000	743,110,579,116	18,271,810,047,468	-	-	21,707,970,626,584
저축은행	100,000,000	416,147,029,007	7,289,213,136,680	-	596,860,000,000	8,302,320,165,687
신 협	-	-	4,740,151,481,096	-	-	4,740,151,481,096
합 계	50,793,660,614,160	18,611,682,235,623	30,312,445,482,037	10,579,868,836,210	596,860,000,000	110,894,517,168,030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포함

사. 상환기금 자금지원 세부 내역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구 분		지원금액
출 자	서울은행	4,680,900,000,000
	제일은행	5,024,779,614,160
	한빛은행	6,028,600,000,000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192,300,000,000
	하나은행(하나 · 보람합병)	329,500,000,000
	조흥은행	2,717,900,000,000
	평화은행	493,000,000,000
	경남은행	259,000,000,000
	광주은행	170,400,000,000
	제주은행	53,100,000,000
	수협	1,158,100,000,000
	농협	96,200,000,000
	한아름종합금융회사	30,000,000,000
	하나로증권	2,491,200,000,000
	한스, 한국, 중앙증권	150,000,000
	영남증권	171,700,000,000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00,000,000
	서울보증보험	10,250,000,000,000
	대한생명보험	3,550,000,000,000
	국민, 태평양, 두원, 동아, 한덕, 조선생명보험	2,119,658,000,000
	한국투자신탁증권	5,164,942,000,000
	대한투자신탁증권	2,900,332,000,000
	정리금융공사	100,000,000
	대한, 국제화재보험	100,000,000
	현대투자신탁증권	1,911,599,000,000
	소 계	50,793,660,614,160
출 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5개 인수은행)	9,711,345,100,982
	한빛, 경남, 광주, 평화, 서울, 제주은행	2,967,700,000,000
	농협	87,000,000,000
	삼성, 흥국, 교보, 제일생명(4개 인수보험사)	1,164,097,000,000
	제일은행	1,152,835,437,209
	대한, 현대, 금호, 동양, SK생명보험	1,422,018,490,794
	부민금고 등	416,147,029,007
	대한화재	50,943,000,000
	우리(舊하나로)증권	743,110,579,116
	국제화재	73,927,000,000
	동양, 삼성, 현대, LG동부화재	242,451,000,000
	녹십자(대신)생명	139,254,000,000
	KB(한일)생명	26,520,812,719
	한국투자신탁증권	78,361,926,245
	대한투자신탁증권	63,012,085,327
	현대투자신탁증권	272,958,774,224
	소 계	18,611,682,235,623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구 분		지원금액	
예금보험금지급	직접지급	신용협동조합	4,740,151,481,096
		증권회사(4개)	11,270,816,793
		상호신용금고	1,233,544,136,680
		영남, 한솔, 한국중금	146,321,444
	정리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지급	한아름종합금융(종금 18개)	18,271,663,726,024
		한아름상호신용금고(금고 59개)	6,055,669,000,000
	소 계		30,312,445,482,037
자산매입	직접매입	제일은행(신주인수권부사채)	24,896,685,840
		제일은행(베트남, 뉴욕현지법인지분)	16,477,525,891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오토넷주식등)	856,969,163,340
	정리금융공사 대출을 통한 매입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58,800,000,000
		제일은행	7,906,269,862,070
		동아, 국민, 태평양, 대한, SK생명보험	349,481,101,882
		한국투자신탁증권	483,046,830,489
		대한투자신탁증권	653,949,292,558
		현대투자신탁증권	129,978,374,140
		소 계	10,579,868,836,210
대 출	상호신용금고(13개)	596,860,000,000	
	소 계	596,860,000,000	
총 계		110,894,517,168,030	

아.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	-	-	-	-
(생명보험)	-	-	-	-	-	-
(손해보험)	-	-	-	-	-	-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2,383	208,633	36,060	1,100	775	248,951
합 계	3,594	233,175	50,472	5,991	994	294,226

주 : 1) '10년 1월 1일 실험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자. 연도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금 액
2000 이전	103,457
2001	41,179
2002	26,634
2003	56,034
2004	56,672
2005	36,117
2006	34,001
2007	43,660
2008	23,980
2009	24,118
2010	29,295
2011	12,679
2012	13,769
누 계 ¹⁾	501,595

주 : 1) 현투증권 등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부담금 2,351억원(2004년도), 458억원(2006년도), 93억원(2007년도), 200억원(2012년도) 포함

차. 형태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¹⁾	대출금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6,191,224,103,757	69,899,577,343	1,849,501,530,669	6,583,437,515,441	-	24,694,062,727,210
금융투자	1,212,144,785,109	323,124,716,519	7,800,810,225	1,797,921,926,521	-	3,340,992,238,374
보 험	3,630,002,518,132	88,750,917,579	431,028,239,213	240,566,938,460	-	4,390,348,613,384
(생명보험)	(1,387,770,564,000)	(84,780,058,175)	(366,222,730,440)	(240,566,938,460)	-	(2,079,340,291,075)
(손해보험)	(2,242,231,954,132)	(3,970,859,404)	(64,805,508,773)	-	-	(2,311,008,322,309)
종합금융	141,581,602,890	5,931,643,350	8,434,489,993,851	-	-	8,582,003,240,091
저축은행	-	34,129,258,277	5,102,352,317,709	-	596,860,000,000	5,733,341,575,986
신 협	-	401,687,311	3,418,372,118,209	-	-	3,418,773,805,520
합 계	21,174,953,009,888	522,237,800,379	19,243,545,009,876	8,621,926,380,422	596,860,000,000	50,159,522,200,565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카.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2012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

금융권별	1997년말 총기관수 (A)	구조조정현황					신설 등	현재 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 병	해산·파산, 영업이전등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11	-	16	48.5	1	18
비은행	2,062	179	228	583	990	48.0	195	1,267
• 종 금	30	22	8	-	30	100.0	1	1
• 증 권	36	6	8	2	16	44.4	31	51
• 보 험	50	10	7	6	23	46.0	28	55
• 자산운용	24	6	10	-	16	66.7	74	82
• 저축은행	231	130	28	1	159	68.8	25	97
• 신 협	1,666	2	154	574	730	43.8	18	954
• 리 스	25	3	13	-	16	64.0	18	27
합 계	2,095	184	239	583	1,006	48.0	196	1,285

자료 : 공적자금관리백서, 2012년 8월

타. 공적자금 지원 실적

(1997년 11월~2012년 12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합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 등		-	-	-	-	2.4	2.4
합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자료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내일을 지켜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여러분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제도로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농협·수협 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 적금, 원본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수익증권, 펀드 등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예탁한 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보호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하시는 통장, 증권 및 증서에 인자되는 보호여부 문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영업점 창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와 금융상품 홍보물 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금융상품 안내란에도 보호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 보호예금도 일정기간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이 자료는 예금자보호제도와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상담전화 1588-0037 / 홈페이지 www.kdic.or.kr



2012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발행인_ 김 주 현

편집인_ 박 태 준

발행처_ 예금보험공사

주 소_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 화_ 02) 758-0114

팩 스_ 02) 758-0220

기획·인쇄_ 우리기획 02) 502-0014



2012 Annual Report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